발 간 등 록
52-6260000-000231-10

2018
계약심사 사례집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목 차

Ⅰ 계약심사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 3
2. 계약심사 기본현황 ····· 4

Ⅱ 계약심사 운영

1. 계약심사 운영근거 ····· 7
2. 계약심사 대상 ····· 7
3.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 8
4. 공사·용역·물품 구매의 분류 및 개념 ····· 9

Ⅲ 계약심사 추진실적

1. 2017/2018 계약심사 비교분석 ····· 13
2. 2018년 계약심사 추진실적 ····· 13
3. 계약심사 방향 및 전문성 강화 ····· 15
3. 2017년 계약심사 실적 ····· 15
4.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 16

Ⅳ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1. 공사분야 ····· 19
2. 용역분야 ····· 25
3. 물품구매 · 제조분야 ····· 26

Ⅴ 계약심사 사례

1. 토목분야 ····· 29
2. 건축분야 ····· 43
3. 녹지분야 사례 ····· 51
4. 기계분야 사례 ····· 59
5. 전기 · 정보통신분야 사례 ····· 67
6. 용역분야 사례 ····· 79
7. 물품분야 사례 ····· 91
8. 2018년 계약심사현황 ····· 103

Ⅵ 부 록

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161
2.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 175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216
4.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239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251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 ····· 279
7. 측량대가의 기준 ····· 297

Ⅶ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303
2. 예규, 고시, 지침 등 ····· 303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303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303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304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304
7. 품셈 등 적산 기준 ····· 304

Ⅰ 계약심사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 3

2. 기본현황 ····· 4

Ⅰ 계약심사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 계약심사 제도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등의 계약체결 요구 전에 산출물량 및 단가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세출예산의 과다지출을 방지하고 발주부서의 설계역량 향상을 유도하여 사업 추진 시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행정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원가절감을 통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등에서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접근한 최적의 예정가격이 작성되도록 심사·지원하는 제도로서 실거래가격, 적정원가산출, 창의적 공법적용, 적정한 설계변경 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함

○ 공사, 제조업계는 실물경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발주원가 삭감은 공사품질 저하,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실적 위주 계약심사라는 주장과 불만이 상존하고 있어,

○ 개방적인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위해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보장, 합리적 설명으로 발주부서와 상호간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일방적 심사통보가 아닌 계약심사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한 심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계약심사 기본현황

○ 인력현황(감사2팀) : 1팀 11명

계	직 급 별			직 렬 별						
	5급	6급	7급	공업		시설		전산	행정	녹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11명	1명	8명	2명	2명	1명	3명	1명	1명	2명	1명

○ 주요업무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정보통신, 소방분야 등의 공사설계 금액의 적정성 심사
-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설계 및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 국·공유재산 등 매각·매입 계약 및 채무부담·수입계약, 연간 단가 계약 등에 대한 심사
- 물품제조·구매 분야의 원가계산 등 심사
- 조달가격,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가격의 적정성 심사

Ⅱ 계약심사 운영

1. 계약심사 운영근거 ····· 7

2. 계약심사 대상 ····· 7

3.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 8

4. 공사·용역·물품구매의 분류 및 개념 ····· 9

Ⅱ 계약심사 운영

1. 계약심사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7호, '18. 12. 1.)
○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783호, '13. 10. 9.)

2. 계약심사 대상

○ 계약심사 대상 기관

시본청	의회	자치구 · 군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시 출연기관
- 각 실·과 - 직속기관 - 사업소	시의회 사무처	- 국·시비 보조사업 - 재배정사업 - 구·군 요청사업	공사·공단	부산광역시 의료원	자본금의 50/10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계약심사 대상사업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공 사</td><td rowspan="2">용 역</td><td colspan="2" rowspan="2">물품제조·구매</td></tr>
<tr><td>일반공사</td><td>전문공사</td></tr>
<tr><td>대상
금액</td><td>추정금액
5억원 이상</td><td>추정금액
3억원 이상</td><td rowspan="2">추정금액
1억원 이상</td><td rowspan="3">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td><td rowspan="3">추정금액
1억원 이상</td></tr>
<tr><td>설계
변경</td><td colspan="2">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계약금액의 10%이상 변경</td></tr>
<tr><td>대상
사업</td><td>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td><td>조경, 전기, 통신, 설비
문화재, 소방공사 등
전문공종 공사</td><td>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td></tr>
<tr><td>대상
기관</td><td colspan="3">시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시의회
자치구·군, 공사·공단, 의료원 등 출연기관</td><td>시본청,사업소
시의회
자치구·군</td><td>공사·공단
의료원 등
출연기관</td></tr>
</table>

○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및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발주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ex) 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 조달청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3.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사업부서 → 심사부서 → 업무담당자 지정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 누락 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 복합공종의 경우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검토 - 기계경비 산출서,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팀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팀장 → 과장 → 국장(전결규정)
⑧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 시 구비서류

-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Auto Cad 도면)
- XML 저장 파일(「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호환규정 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XML 파일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 조건 등 보조자료)
- 수입물품, 특정제품, 특허공법, 신기술공법 선정·채택시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또는 선정 관련 방침승인 내용

4. 공사 · 용역 · 물품구매의 분류 및 개념

1) 계약심사대상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4호에 따라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으로 분류

①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

②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③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④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⑤ 기타공사 :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①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②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③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장 제5절 제5관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3) 물품은 특수규격품의 제조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

① 제조 :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품제조을 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심사

② 완제품 : 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 제외) 등 물품 구매시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지 등), 직접 조사한 시중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 구매가격을 심사

Ⅲ 계약심사 추진실적

1. 2017/2018 계약심사 비교분석 ····· 13

2. 2018년 계약심사 실적 분석 ····· 13

3. 계약심사 방향 및 전문성 강화 ····· 15

4. 2017년 계약심사 실적 ····· 15

5.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 16

Ⅲ 계약심사 추진실적

1. 2017/2018 계약심사 비교분석

○ 2017년 대비 2018년은 복지정책확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실현, 스마트 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건설공사 분야 비중이 축소되어 사업소 및 구청 등의 심사요청 건수가 적고 특히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공사·공단(5%)의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전체 심사금액(△1,940억원) 및 건수(△671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2017/2018 비교 대비표 -

(단위 : 억원, %)

연도	총 심사액[억원]	총 건수	공사·공단[%]	절감율[%]	비고
2018	7,007	1,176	18	4.11	
2017	8,947	1,269	23	3.61	
계	△1,940	△671	△5	0.5	‘

○ 하지만 2017년과 비교하여 심사 절감율(0.5%)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부서의 업무연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2018년 계약심사 실적 분석

○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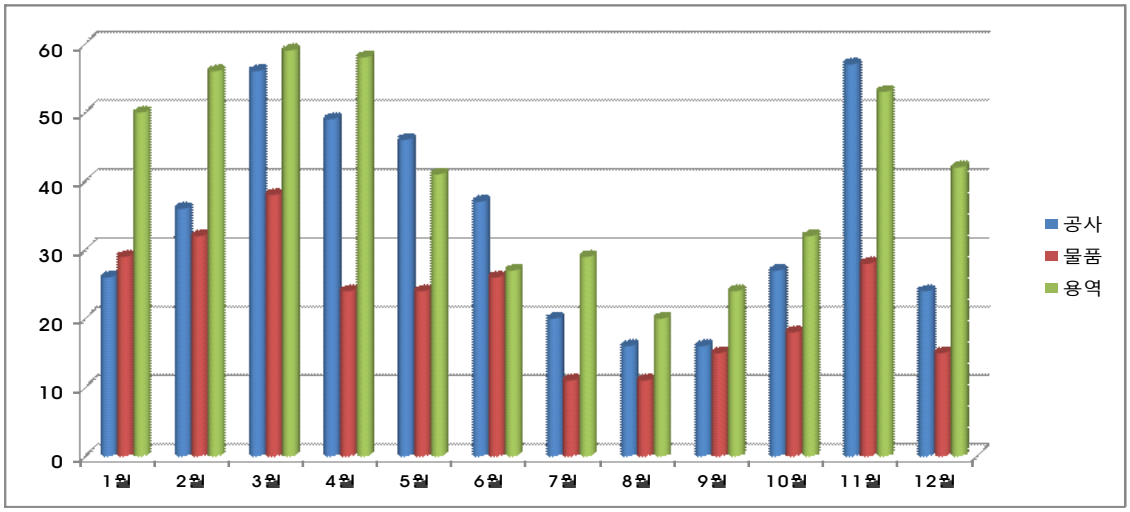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분 류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전 체	**1,176**	**7,007**	**6,719**	**288**	**4.11**
공 사	411	4,276	4,061	215	5.02
용 역	271	1,771	1,731	40	2.28
물 품	494	960	927	33	3.46

○ 2018년 계약심사 결과 총 1,176건 7,007억원을 심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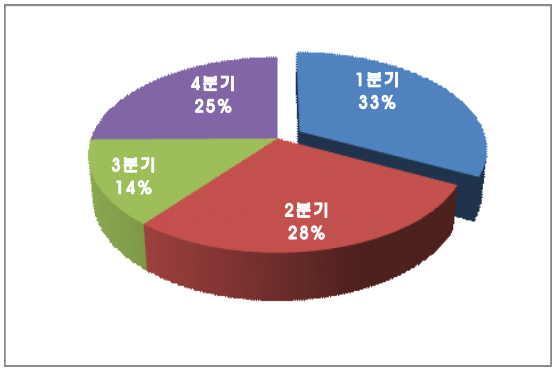
- 총 심사건수 중 795건(67.6%) 감액조정, 381건(32.4%) 금액 조정없음
- 총 심사금액 중 5,582억원(79.7%) 감액조정, 1,425억원(20.3%) 금액 조정없음
- 절감액 288억원(절감률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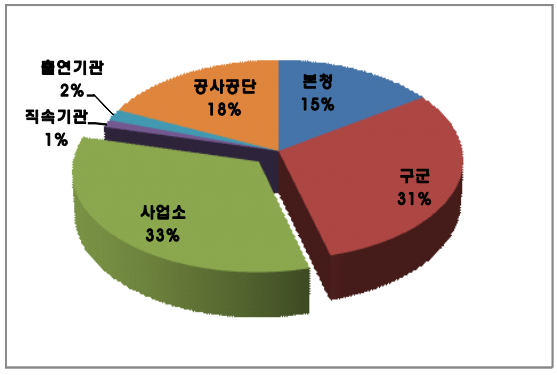
○ 월별 현황



○ 심사요청 건수 1,176건 중 용역 494건(42%), 공사 411건(35%), 물품 271건(23%)건 순으로 분석되고 1·2분기에 계약심사 요청이 많은 사유는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분기별 및 요청기관별 현황





○ 특히 심사요청 및 절감 조정 분포율이 많은 사업소(33%), 구·군(31%), 공사·공단(18%)의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설계능력 부족으로 추정됨

○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요인제거로 288억원 예산절감
- 계약심사 시 공사(물품) 소요자재를 부산지역 생산자재 사용권장

3. 계약심사 방향 및 전문성 강화

○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제시 및 단가조정 등의 대안 제시로 사업의 적정성 강화

- 공법반영 등 내역만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현장 확인 후 심사
- 공사수행 주체인 발주부서 감독관,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심사내역 조정

○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

- 심사기법, 원가산정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 등 심사담당 직원 간 업무연찬
- 계약심사 자료방 개설·운영 : '16. 7. 1~ 운영, 법규·서식 등 자료공유
-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배포(140부) :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심사착안사항
-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11월) 예정(2년주기) : 설문인원 약1,200명

※ 2017년 계약심사운영 만족도 84.9%(공정성 90.2%, 사전협의 86.2%, 신속성 94.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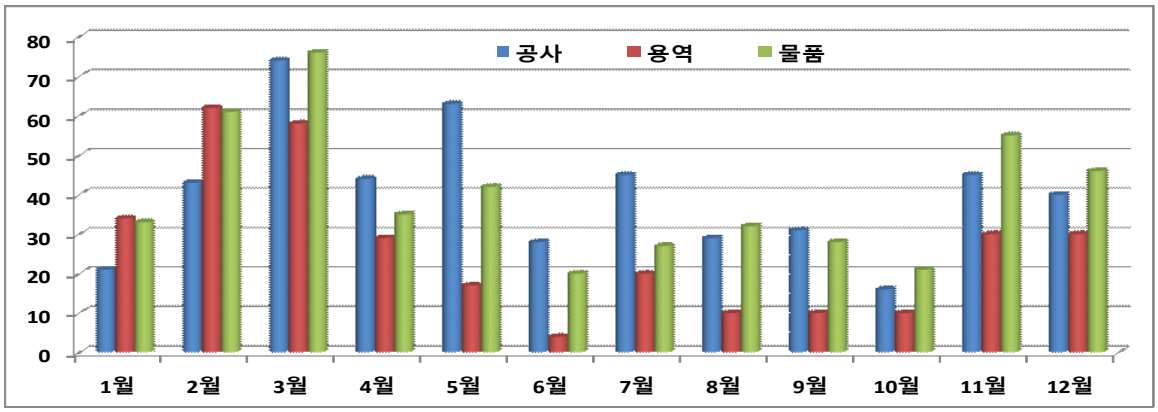
4. 2017년 계약심사 실적

○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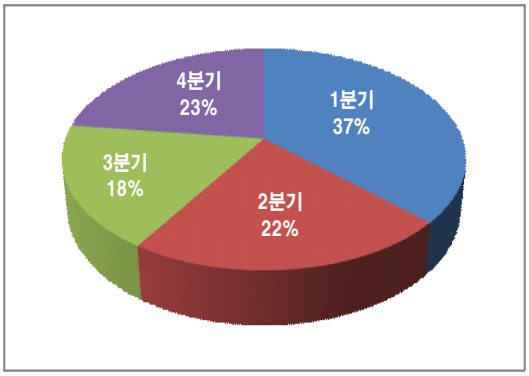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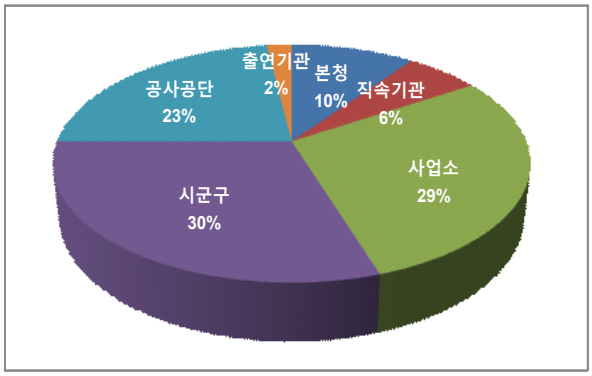
분 류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전 체	**1,269**	**8,947**	**8,624**	**323**	**3.61**
공 사	474	5,059	4,861	199	3.93
용 역	314	2,785	2,710	74	2.67
물 품	481	1,103	1,053	50	4.49

○ 월별 현황



○ 분기별 및 요청기관별 현황





5.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 2016년도

(단위 : 억원, %)

분 류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전 체	**1,217**	**10,323**	**9,967**	**356**	**3.45**
공 사	386	6,406	6,188	218	3.41
용 역	316	2,834	2,748	86	3.03
물 품	515	1,083	1,031	52	4.79

○ 2015년도

(단위 : 억원, %)

분 류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전 체	1,164	8,344	8,038	306	3.67
공 사	361	4,783	4,595	188	3.93
용 역	262	2,074	2,021	53	2.58
물 품	541	1,487	1,422	65	4.35

Ⅳ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1. 공사분야 ····· 19

2. 용역분야 ····· 25

3. 물품구매 · 제조분야 ····· 26

1. 공사분야

토목분야 검토내용	
구 분	주요검토사항
공사계획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공사의 분할여부 ○관련법에 따른 별도 발주사업의 포함여부(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도로 등 연결허가,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 등 공사 관련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일위대가 및 단가	○심사요청 시점의 관련기준 및 고시, 발표자료 등 적용 ○법정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보험,안전관리비 등) 적정요율반영 ○건설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여부 ○유류단가는 지역별 한국석유공사 단가적용(부가가치세 제외) ○실적공사비(국토교통부) 적용
자재단가	○전문가격조사기관(물가자료, 가격정보 등) 3개 이상 비교 후 최저가 적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여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타 지역제품 반영 시 동일품질일 경우 지역 내 생산제품 사용권장 ○견적에 의한 공종은 현장설치도, 부가가치세, 이윤 등 중복적용 검토
불합리한 설계개선	○사토, 순성토 및 자재 운반은 실 운반거리 적용으로 과다계상 방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내역 및 자재적용 : 합판거푸집 → 유로폼 ○현장사무실 규모 적용 시 총공사비 기준 설계를 「품셈(토목)2-1 가설물의 한도」에 따라 직접노무비 기준으로 규모조정 ○공구(기구) 손료는 재료비 항목으로 적용 ○원재료 운반(골재 등) 노무비+재료비+경비 → 경비 항목으로 적용
자원 재활용	○도로, 하수도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 순환골재 사용여부 검토 - 순환골재 등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확인
표준품셈	○견적 처리된 품을 표준품셈 적용 및 유사품셈 준용 ○노임, 품의 할증은 작업여건, 공종 등 검토하여 적용
특허, 신기술	○특허, 신기술에 대한 공법채택 시 원가분석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여부 검토

건축분야 검토내용	
구 분	주요검토사항
일반사항	○심사요청 시점의 원가계산, 제경비 비율 및 노임단가 적용 ○일정규모 이상의 사급자재 → 관급자재 전환(엘리베이터, 물탱크 등) ○견적내용 분석을 통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중복계상방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여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여부
가설공사	○공사예정공정표 확인을 통한 외부비계 등 가설자재 사용기간 조정 ○가설사무실 및 창고설치 재료비와 노무비 → 경비로 적용 ○안전망(메쉬망), 낙하물방지망 등 제외 → 안전관리비와 중복적용 불가 ○내부수평비계삭제 → 이동식 강관말비계 적용(100㎡당 1대정도) ○단층건물 신축공사 시 비계다리 삭제 → 현장실적용 기준 ○규준틀 설치 조정 : 면적당 → 개소당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진동기 노무비 삭제(콘크리트타설 비용에 진동기품포함) ○건축물의 부피,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펌프카 규격 결정 ○철근현장가공조립품은 도심지등 입지여건에 따라 공장가공현장조립 품셈 적용
철골공사	○철골공사 수량산출시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확인 후 정미수량 반영
조적공사	○벽돌소운반 1층은 인력, 2층 이상은 기계사용(리프트 등)
미장공사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하드너 시공 시 기계피니셔 마감제외
칠공사	○석고보드면 바탕 만들기 방식조정 : 올퍼티 → 줄퍼티 ○철재면 페인트칠방식 조정 : 붓칠/롤러칠 → 뿜칠
특허, 신기술	○특허, 신기술에 대한 공법채택 시 원가분석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여부 검토

기계분야 검토내용	
구 분	주요검토사항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표준품셈(개정사항 포함)반영 여부 ○내역서와 수량산출서의 자재수량 등 일치여부 확인 ○공구손료 재료비 항목으로 분류여부 확인 ○견적내용 분석을 통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중복계상방지 ○수입자재는 수입원장 확인 등
장비설치 공 사	○조달구매 등록제품 관급자재로 구매 - 물탱크, 부스터펌프, 공조기(냉난방기기, 공기순환장치), 온수보일러 등 ○지하저수조(STS, FRP) 실제 예측용량 확인으로 과다 설계 조정 ○냉난방기기(GHP, EHP)구역별 예상부하량 계산 후, 설비용량 반영 - 냉매배관 도면에 의한 수량산출 적용, 재료할증 5% 이내로 조정 ○일반기기 설치 세부 수량산출서 근거에 의거 설계중량 확인 조정
배관 설치공사	○토목공사 배관라인과 동일한 터파기, 되메우기 수량 이중계상 확인 ○스테인리스 강관배관 옥외배관 설치품 10% 감(기계1-1-2-3)확인 및 재료할증 5%로 조정
관보온 공사	○은박지 부착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마감재 시공 시 품의 5%감(기계1-3-1)확인 ○ 유리면 보온재로 마감재 시공 시 시공품의 10%감(기계1-3-1)
가스설비 공사	○공급관 기밀시험시 지하매설 공급관 단위는 구간당 100m 집단아파트 상승관 단위는 구간당 20m로 단위수량 확인(기계4-3-4)
지열설비 공사	○시험천공,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반영조치 ○조달구매등록 관급자재로 구매조정
특허, 신기술	○특허, 신기술에 대한 공법채택 시 원가분석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여부 검토

전기분야 검토내용	
구 분	주요검토사항
원가계산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 적정성 여부 검토 ○안전관리비 계상 적정성 여부 검토 - 대상액 구분, 관급자재 부가세 제외 등 ○퇴직공제부금 적용 오류 여부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조세제한특례법 등 법령의 적용 여부
내역서	○수량산출서와 내역수량의 일치 여부 ○수량 단위 오류 적용 여부 ○노임의 과다 산정 및 중복 계상 여부
일위대가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 손실률 과다 적용 여부 ○산출 공량(기본품 및 할증)의 적정성 여부 - 품셈 해설 부분 누락 또는 확대 해석 - 야간 할증의 적용 ○케이블 동시 시공품 적용 여부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다심 케이블의 품 적용 여부 ○건주 작업용 기계장비 경비 산정 적정성 여부 ○명시되지 않은 품 타 품셈 적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일위대가간의 단가 일치 여부
단가조사	○적정단가 적용 여부 - 자료지(조달청 발표 가격정보, 시중자료지, 견적 등) 최저 단가 적용 ○견적단가 적정성 여부 - 견적 조건(납품, 설치, 세 포함) 확인 - 견적서 내의 자재비와 제작노무비 단가 확인

정보통신분야 검토내용	
구 분	주요검토사항
원가계산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 적정성 여부 검토 ○안전관리비 계상 적정성 여부 검토 - 대상액 구분, 관급자재 부가세 제외 등 ○퇴직공제부금 적용 오류 여부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조세제한특례법 등 법령의 적용 여부
내역서	○수량산출서와 내역수량의 일치 여부 ○수량 단위 오류 적용 여부 ○노임의 과다 산정 및 중복 계상 여부
일위대가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 손실률 과다 적용 여부 ○산출 공량(기본품 및 할증)의 적정성 여부 - 품셈 해설 부분 누락 또는 확대 해석 - 야간 할증의 적용 ○케이블 동시 시공품 적용 여부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다심 케이블의 품 적용 여부 ○건주 작업용 기계장비 경비 산정 적정성 여부 ○명시되지 않은 품 타 품셈 적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일위대가간의 단가 일치 여부
단가조사	○적정단가 적용 여부 - 자료지(조달청 발표 가격정보, 시중자료지, 견적 등) 최저 단가 적용 ○견적단가 적정성 여부 - 견적 조건(납품, 설치, 세 포함) 확인 - 견적서 내의 자재비와 제작노무비 단가 확인

조경분야 검토내용	
구 분	주요검토사항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 포함)반영 여부 ○내역서와 수량산출서의 자재수량 등 일치여부 확인 ○공구손료, 재료비 항목으로 분류여부 확인 ○견적내용 분석을 통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중복계상방지 ○수입자재는 수입원장 확인 등
식재공사	○수목구입단가 조달청 계약단가 적용여부 ○수목 가식품은 일반 식재품의 50%적용 ○지주목 설치기준 확인 ○잔디식재면적 확인(교목 식재면적 감 여부 등) 및 현장여건 검토 후 식재방법 조정 ○수목 규격 및 관목 식재 방법에 따른 비료량 확인 ○규격별 관목식재 밀도 확인 ○현장에 적합한 초화식재 방법 확인 ○위험수목 제거 시 견적품 지양하고 현장에 적합한 일위대가 작성반영
시설물 설치공사	○데크 설치 업체별 비교견적 지양하고 일위대가 작성반영 - 데크 설치 노무비, 목재데크 설치품 반영확인 - 하지틀 각형강관 설치 시 경령형강철골조 반영여부 - 목재이격 면적 반영여부 ○ 조경석 등 설치방법에 따른 적정 품 적용여부 ○ 앉음벽 등 잡철물 설치 설치 품의 적정 품 적용여부 ○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인증 제품 반영 여부 ○ 조형가벽, 디자인 판석 등 완제품의 할증 제외여부
기타	○토사운반 산출근거 확인조정 - 사토장 거리 및 운반덤프 선정 적정여부 - 도로교통량 조사자료(토목11-9)에 의거 평균주행속도 적용여부
특허, 신기술	○특허, 신기술에 대한 공법채택 시 원가분석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여부 검토

2. 용역분야

용역분야 검토내용		
구 분		주요검토사항
기술 및 일반 용역	분리발주 대상여부	○1천만원 이상인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설계용역 (단, 도로·철도분야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해 지정) ○3천만원 이상인 측량용역 ○개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문화재발굴조사 용역 등
	단가적용 오류	○견적가 적용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적용 여부 ○노무비의 월단가(M/M)산정 시 적용 기준일수 적정 여부
	공종별 주요물량 확인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상이 여부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폐기물 수량 산정 시 성상별 단위중량 적용 여부
	표준품셈 적용오류	○재료 및 노무량 검토시 품셈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미반영 등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지반조사(천공)적용시 기술료 중복적용 여부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등 오류여부 ○관련법에 의한 각종품셈 적용여부 확인
	대가기준 적용여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른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요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발주방식 단계별 업무비율 및 리모델링 등의 추가대가 요율적용 적정여부 ○견적가 적용시 3개 이상의 업체견적 적용여부
	적정단가 적용여부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등 심사당시 발표단가 적용여부 ○시중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시 3개 이상 단가조사 비교여부
학술 용역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과 상호 내용일치 여부 ○학술연구용역대가기준과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숙박을 요하는 여비산출시 교통비 중복반영여부 ○이윤과 부가세 등 제비율 부과 여부
	문화재 조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반영여부 ○안전관리비 반영 여부
단순노무 일반용역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임금단가산정기준을 시중노임단가 적용

3. 물품구매 · 제조분야

<table>
<tr><th colspan="2">물품 제조 · 구매 분야 검토내용</th></tr>
<tr><td>구 분</td><td>주요검토사항</td></tr>
<tr><td>제조·구매</td><td>○투입직종별 시중노임 적용 시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구분
○적정 일반관리비율 반영(공사요율 → 제조업종별 요율)
○제조경비에 계상된 외주가공비·기술료 등에 대해 이윤 제외
→ 물품제조·구매와 공사 간 구분 명확화</td></tr>
<tr><td>완제품
구매</td><td>○특허 또는 특정제품, 수입용품 등 구매는 계약심사에 한계
○시중 거래실례가격, 물가정보지, 조달청 공표자료 등을 통한 최적가격 반영 → 실수요기관 여건 및 지역 내 생산제품 우선 반영여부</td></tr>
<tr><td>인쇄물
기획편집</td><td>○인쇄물 규격(절수)산정 적정성
○용지의 종류에 따른 가격 적정성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적용
- 물가정보지외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가 적용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적정성
- 조판할증 또는 감액요인 해당여부 확인
- 추가인쇄의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 제외
○필름출력비와 인쇄판대 산정 적정성
○후가공비 산정 적정성
○기획편집 디자인료 산정 적정성

※ 조달청 인쇄요금기준은 2011.5.31. 폐지되었으며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초금액 책정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
<table>
<tr><th>구 분</th><th>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th></tr>
<tr><td>동일(유사)한
구매(계약)
사례가 있는 경우</td><td>○ 최근 구매(계약) 사례건의 기초금액 수준으로 적용하되 계약수량, 물가 및 임금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
- 거래실례가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활용</td></tr>
<tr><td>신규로 구매하는
경우</td><td>○ 공공기관 자체 또는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 재료비, 조판비, 필름출력비 등 각 항목별로 가격조사 실시
○ 3개월 이내 발행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판단 후 결정</td></tr>
</table>
</td></tr>
</table>

V 계약심사 사례

1. 토목분야 ····· 29

2. 건축분야 ····· 43

3. 녹지분야 ····· 51

4. 기계분야 ····· 59

5. 전기 · 정보통신분야 ····· 67

6. 용역분야 ····· 79

7. 물품분야 ····· 91

8. 2018년 계약심사 현황 ····· 103

1. 토목분야 사례

《 ○○○처리구역 이송관로 설치공사 ····· 31

《 ○○ 항 정비사업 ····· 32

《 ○○ 터널 상부 공원화사업 ····· 33

《 ○○ 구름다리 복원사업 ····· 34

《 ○○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35

《 ○○ 천 정비사업 ····· 36

《 ○○○○ 기반조성공사(2공구) ····· 37

《 ○○○ 교량기초 보호공사 ····· 38

《 ○○○○○ 3단계 2공구 조성공사 ····· 39

《 ○○○ 교량배수시설 개량공사 ····· 40

《 ○○○○○ 유출입관 부설공사 구간내 아스팔트 포장공사· 41

《 ○○ 배수지 보수공사 ····· 42

○○○처리구역 이송관로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압송관로(D350㎜) 설치 L=3.13㎞, 유량조정조 설치 V=3,000㎥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8,033,977	7,594,306	△439,671	△5.47%

❑ 심사내용

❍ 적용 품 조정

▸ 터파기 · 잔토처리 · 유용토운반등 장비 및 적치수량 변경

▸ 교통신호수(유량조정조) 품 조정 : 품의 50%

▸ 추진구간 계측 수량 제외

▸ 터널내 관보호공(트렌치) 중 인력치핑 품 제외

▸ 철근가공(유량조정조) 중 직선 철근수량 제외 등

❍ 기계적용 대가 및 품조정

▸ 배관(직관)수량조정 (Fitting류 및 밸브류), 관급기자재 단가조정 등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항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방파제 설치(L=64m) 및 잠제 설치(L=20m, B=7.5m)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3,122,686	2,997,460	△125,226	△4.01%

❑ 심사내용

❍ 적용 품 조정

▸ 수중고르기 인력품 조정: 작업반장 → 보통인부

▸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횟수 변경: 1월1회→3월1회

▸ 타이셀케이슨 속채움 사석 투하 공정 누락분 추가 적용(0㎥→855㎥)

▸ 해상 운반거리 조정: 0.2km → 0.1km(최단거리 적용)

▸ 피복석 소할 및 선별공정 삭제(석재원 현장여건 감안)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터널 상부 공원화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복개구조물(거더교) 설치: L=41.1m, B=40m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3,699,240	3,396,550	△302,690	△8.18%

❑ 심사내용

❍ 적용 품 조정

▸ 철근가공조립 조정: 현장 가공 조립→공장 가공 조립+운반비 적용

▸ 배력철근 8.0m이상 조립품만 적용하고 가공비 제외

▸ 제작장 복구비용 조정: 조성비의 50% 적용

▸ 골재운반 트럭 조정: 15톤 덤프 → 24톤 덤프

▸ PSC BEAM 전도방지공 수량(중복적용) 조정: 54공→18공

▸ 시공상세도 작성비 반영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구름다리 복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현수 보행교량 설치: L=69.15m, B=2m

▸ 목재데크 설치: L=51m, B=1.5~2m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3,550,490	3,325,920	△224,570	△6.32%

❑ 심사내용

❍ 적용 품 조정

▸ 강판 가격 부가세 이중 적용분 감액

▸ 그라운드 앵커설치 현장설치 가격으로 제경비 삭제

▸ 주탑하부 기초거푸집(3회)→유로품 적용

▸ 기초부 터파기 지반조사 참고 연암→풍화암 적용

▸ 유리 바닥판(강화유리) 가격 제경비 이중 적용분 삭제

▸ 삭도공 종횡단 측량비 삭제(기존 자료 활용)

▸ 기타 시방서 보안(추정 설계된 하부 기초지지력 확인을 위해 시공전 확인 보우링 실시후 시공 등)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관로 매설(D700mm): L=373m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205,901	1,029,972	△175,929	△14.58

❑ 심사내용

❍ 적용 품 조정

▸ 신호수 작업능률저하 할증 품(20%) 삭제

▸ 가설사무소 설치비(재료비+노무비+경비) 경비 적용

▸ 야간 굴착구간 유용토 운반비 삭제(당일굴착 당일복구)

▸ 가시설 설치 및 인발계수 중간값 적용

▸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90%+인력10% → 기계 100%

▸ 시험굴착비용 추가 적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 사용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1,172m, 교량 재가설 2개소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2,035,100	1,884,100	△151,000	△7.41%

❑ 심사내용

❍ 적용 품 조정

▸ 설계도서 수정: 옹벽상세도, 측구상세도 재료표 수정(내역서 불일치)

▸ 잔토 운반거리 조정: L=27km→15km(인근 사토장으로 조정)

▸ 보조기층, 망태석, 자연석 등 현장내 소운반 거리 조정: L=250m→100m

▸ 보조기층용 잡석을 순환골재로 대체

▸ 배수관 기초 거푸집 조정: 합판 4회→6회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기반조성공사(2공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지조성 A=205,304㎡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1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7,201,750	6,605,330	△596,420	△8.28%

❑ 심사내용

❍ 원가계산 요율 조정

▸ 환경보전비, 가설비, 운반비 요율 조정

❍ 적용 품 조정

▸ 기존 암거 준설회수 조정 : 8회 → 4회

▸ 품질시험 및 수수료 조정

▸ 보도블럭 헐기 조정 인력 → 기계품으로 조정

▸ 생태교량공 거푸집 매끈한 마감 → 보통마감 조정

▸ 토공 토량환산계수 : L=1.245 → 1.25, 싸이클 시간 135 ˚ → 90 ˚

▸ 철근가공품 보통 → 간단 적용하고 수평철근은 조립단가 적용

▸ 시험발파비 삭제 등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교량기초 보호공사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 ▸ 세굴보호공 L=48m, B=44m 등
-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452,200	379,200	△46,000	△10.82%

❑ 심사내용

- ❍ 원가계산 요율 조정
  - ▸ 건강보험료 조정 1.7% → 3.12%, 연금보험료 2.49% → 4.5%
- ❍ 적용 품 조정
  - ▸ 염해방지 도장품 일괄경비로 계상
  - ▸ 철근가공 및 조립 7.79ton → 철근가공 조립 4.74ton, 간단 3.05ton
  - ▸ 거푸집 합판 → 유로폼으로 조정
  - ▸ 호안설치 품 자연석 쌓기 → 전석깔기
  - ▸ 터파기 품 및 계수값 조정 K 0.9 → 1.1 , E 0.6 → 0.75
  - ▸ 잔토처리 적재 품 삭제
  - ▸ 철근구조물 깨기 작업량 2.45㎥/hr → 3.3㎥/hr 등
-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3단계 2공구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지조성 A=524,739㎡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7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81,655,200	80,621,200	△1,034,000	△1.27%

❑ 심사내용

❍ 적용 품 조정

▸ 토공 폐기물 상차 K0.55 → 0.7, E0.45 → 0.65

▸ 토공 절취 및 상차의 작업요율 조정 CM 25sec → 22sec

▸ 외부반입토 덤프트럭 운반속도 조정 V3 37.9 → 40.5, V4 38.2 → 42.7

▸ 연약지반공 PBD타설 작업요율 E0.85→0.9, t1 35sec → 31sec

▸ 보차도경계석 설치품 트럭탑재형 크레인 및 이음모르타르 설치 삭제

▸ 교량공 가설공사 목재동바리 → 강관동바리

▸ 교량공 쉬프타일 항타 등 시공장비 조합조정 크롤러 크레인 40ton → 35ton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교량배수시설 개량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슬래브 배수 38개소, 신축이음배수 33개소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613,777	578,766	△35,011	△5.7%

❑ 심사내용

❍ 원가계산 요율 조정

▸ 일반관리비 6% → 5.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0.41% → 0.11% 등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삭제

❍ 적용 품 조정

▸ 배수관 설치 품 조정 보통인부 2인, 배관공 2인→ 보통인부 3인, 배관공 1인

▸ 가설창고, 장비운반, 안내표지판 일괄 경비로 조정

▸ 폐자재 운반은 폐기물 처리비에 포함 계상

▸ 교통신호수 17인 → 8인, 선로신호수 등 79인 → 69인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유출입관 부설공사 구간내 아스팔트 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스팔트 포장(B=1.2~3.0m L=1,250m),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B=3.6m, L=1,250m)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441,698	299,012	△142,686	△32.3%

❑ 심사내용

❍ 적용 품 조정

▸ 표층포설 인력식 소규모 → 기계식 소규모

▸ 보조 기층공 물 20ton → 2ton

▸ 혼합골재 할증 1.284 → 1.158

▸ 장비운반 10회 →5회, 재료비+노무비+경비 → 경비

▸ 절삭 후 아스팔트 포설 및 다짐

- 노면절삭폭 1m, 인력식 소규모포장 → 노면절삭폭 2m, 기계시공 조정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배수지 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지 보수 및 정비(Nix-Tile공법) A=5,216㎡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370,248	379,290	증9,042	2.44

❑ 심사내용

❍ 원가계산 요율 조정

▸ 간접노무비 : 11.6% → 12.6%, 산재보험료 : 3.9% → 4.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55% → 7.38%, 기타경비 : 6.0% → 7.9%

❍ 적용 품 조정

▸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 공기에 대한 손율 조정(일위대가 9호표)
- 6개월 → 3개월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 건축분야 사례

《 ○○ 그라운드 조성공사 ····· 45

《 ○○ 해양레저타운 조성공사 ····· 46

《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 47

《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 48

《 ○○ 원형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 49

《 ○○ 소방서 건립공사 ····· 50

○○ 그라운드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상2층, 20개동, 연면적 1,997.08㎡, 근린생활시설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6,947,096	6,435,197	△511,899	△7.37

❑ 심사내용

❍ 단가 및 수량산출 조정

▸ 크레인(50톤) 중복공사 부분 수량 조정: 440hr → 400hr

▸ 철골세우기, 철골가공조립 수량 적용방법 변경: 동별 적용 → 전체 적용

▸ 내화페인트 적용 부위 조정(데크 구조물 부위 제외): 17,184㎡ → 5,248㎡

▸ 전 공정 보도블럭 철거 수량 조정: 85㎡ → 0.85㎡

❍ 공사난이도, 현장작업 여건에 따라 적정품 조정

▸ 철근가공조립 방법 개선: 현장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현장 조립

▸ 독립기초 시공방법 개선: 합판거푸집 시공 제외(559㎡)

▸ 일반구조용 압연강판(골판 설치) 일위대가 적용 방법 수정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 데크플레이트 설치

▸ 철근콘크리트 철거 적용 장비 변경 : 소형브레이커 → 대형장비

▸ 폐기물 소운반 조정 : 소운반(지게 30m) 적용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해양레저타운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상3층, 연면적 980.0㎡, 관광휴게시설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3,371,498	3,145,831	△225,667	△6.69

❑ 심사내용

❍ 단가 및 수량산출 조정

▸ 파일공사 강봉 재료비 시중가격 반영: 30,000원/m → 12,320원/m

▸ 가시설공사 H-beam 재료비 조달청 단가 반영: 800,000원/톤 → 740,000원/톤

❍ 공사난이도, 현장작업 여건에 따라 적정품 조정

▸ 슬라브 거푸집공법 변경: 합판거푸집 → 데크플레이트

- 조립식 강관동바리 물량 감소: 3,360공㎥ → 2,210공㎥

▸ 파일공사 파일천공 및 설치 일위대가 조정: 대구경보링(지하수개발) 적용

- 중급기술자(0.03인→0.02인), 보링공(0.1인→0.06인), 특별인부(0.07인→0.03인)

▸ 폴리우레아방수(바닥) 일위대가 조정

- 방수공(0.087인→0.056인), 특별인부(0.075인) → 보통인부(0.032인)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767.55㎡, 노유자시설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3,132,801	2,902,793	△230,008	△7.34

❑ 심사내용

❍ 단가 및 수량산출 조정

▸ 고밀도 목재판넬 유통물가(시공도) 적용

- 재료비(308,300원→348,000원), 노무비(60,000원→0원), 경비(21,500원→0원)

▸ 기초 터파기 및 사토운반 물량 누락부분 추가 반영(증액)

- 터파기(1,431㎥), 되메우기(55㎥), 사토운반(1,376㎥)

❍ 공사난이도, 현장작업 여건에 따라 적정품 조정

▸ 합판거푸집 규격 조정: 복잡 3회 → 보통 4회

▸ 유로폼 일위대가 수정: 형틀목공(0.14인/㎡ → 0.1인/㎡)

▸ 철근가공 및 조립 방법 개선: 현장가공, 현장조립 → 공장가공, 현장조립

▸ 경량철골 천정틀(H=1m 이상) 일위대가 수정

- 재료비(4,196원 → 6,354원), 노무비(20,483원 → 8,399원)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 A=961㎡(주차면수 47면)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862,563	1,688,863	△173,700	△9.33

❑ 심사내용

❍ 단가 및 수량산출 조정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물량 증가

- 곡면 거푸집 감소 물량 유로폼 대체 : 1,191㎡ → 1,303㎡

▸ 가시설 흙막이 및 CIP 수량 조정(과다설계 물량 조정)

- H-Pile 천공 물량 감소: 435.3m → 291.3m
- 토류판 설치 및 철거 물량 감소: 245.443㎡ → 183.609㎡
- CIP 천공 물량 감소: 556.7m → 482m

❍ 공사난이도, 현장작업 여건에 따라 적정품 조정

▸ 철근가공 및 조립 방법 개선: 현장가공, 현장조립 → 공장가공, 현장조립

▸ 곡면거푸집 설치·해체 규격 및 수량 조정

- 규격 조정(원판 → 매우 복잡), 수량 조정(1,154㎡ → 1,042㎡)

▸ 철골공사 바탕처리(Shot Blast) 공정 제외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원형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상1층, 연면적 334.1㎡, 개축 및 용도변경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926,500	779,438	△147,362	△15.90

❑ 심사내용

❍ 단가 및 수량산출 조정

▸ 건축물현장정리 면적 조정(중복계산 면적 수정) : 1,244㎡ → 622.3㎡

▸ 강화마사토 포장 면적 조정(조경면적 제외) 및 단가 수정

- 면적 조정(430.79㎡ → 394.81㎡), 단가 수정(43,739원/㎡ → 29,120원/㎡)

❍ 공사난이도, 현장작업 여건에 따라 적정품 조정

▸ 강관비계(미장, 단청공사용) 적용 방식 조정

- 강관비계(쌍줄, 300.69㎡) → 강관조립 말비계(2대)

▸ 강화마사토 위 우레탄방수 마감 변경 : 우레탄 방수 → 에폭시 코팅

▸ 부연치목(인력) 가공방법 변경 : 부연치목(인력) → 부연치목(기계장비)

▸ 지붕틀 설치 일위대가 수정 : 절충식(일본식) → 마루틀설치품의 50% 가산

▸ 프라이머 바름 일위대가 수정 : 보통인부(0.05인/㎡ → 0.005인/㎡)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소방서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상6층, 연면적 4,150.62㎡, 공공업무시설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5,960,400	5,696,895	△263,505	△4.42

❑ 심사내용

❍ 단가 및 수량산출 조정

▸ 강관틀 비계매기 조정: 강관틀 비계매기(1,244㎡) → 이동식 말비계(24대)

▸ 비닐타일깔기(데코타일) 자재단가 수정: 12,700원/㎡ → 10,000원/㎡

▸ 단열재 비드법보온판2종1호 단위두께당 단가 수정: 148.14원/T → 101.85원/T

▸ 로이복층유리(26㎜, 일면강화) 단가 수정 : 91,200원/㎡ → 86,900원/㎡

❍ 공사난이도, 현장작업 여건에 따라 적정 품 조정

▸ 건축물현장정리 일위대가 조정: 보통인부(0.15인/㎡ → 0.1인/㎡)

▸ 강당 무대 높이차 제거를 통한 불필요한 장비 삭제

- 무대시스템마루틀 및 무대계단 삭제, 계단식 겸용 수직형 리프트 삭제

▸ 나무섬유흡음판(벽 15㎜) 위 인테리어필름 시공 제외 : 흡음판으로 마감 충분

▸ 내외부 벽 및 천장 미장 마감면의 페인트 도장 : 바탕만들기 공정 삭제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3. 녹지분야 사례

《 ○○○ 구봉산 치유숲길(2단계) 조성공사 ····· 53

《 ○○○ 반딧불이탐방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 54

《 ○○○ 하부녹화(숲도서관) 조성사업 ····· 55

《 ○○○○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 56

《 ○○○○○ 광장형 공개공지 조성공사 ····· 57

《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 58

○○○ 구봉산 치유숲길(2단계)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치유숲길: 숲길정비 360m, 목재계단, 돌의자 8개, 목재다리 2개소 등

▸ 숲속치유마당: 명상테라피, 편백숲전망대, 목재계단, 풍욕장 2점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292,690	268,863	△23,827	△8.14

❑ 심사내용

❍ 건강보험료 등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건강보험료 1.7% → 3.12%　▸ 연금보험료 2.49% → 4.5%

❍ 적용 품 조정

▸ 목재계단 설치 품 조정 → 건축목공 0.05인/㎡, 보통인부 0.019인/㎡

▸ 명상테라피 등 설치 품 조정 →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종 삭제

▸ 야자매트 설치 품 조정 → 건설표준품셈 조경공사 거적덮기 품 적용(4-2-2)

- 조경공 0.002인/㎡, 보통인부 0.0007인/㎡

▸ 관절단 설치 품 조정 → 건설표준품셈 공통 강관절단 품 적용

- 용접공 0.014인/개, 특별인부 0.006인/개

❍ 로프난간 설치 품 조정 → 앵커볼트 설치품 조정, 적용단가의 50% 반영(단순)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조달청 공표가격 및 시중 물가지, 견적가격 등 비교하여 낮은 가격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

○○○ 반딧불이탐방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포장공: 황토포장 886.3㎡, 목재 데크로드 1식

▸ 식재공: 산수국 등 6종 1,405주, 노루오줌 등 2종 5,000본, 조경석 쌓기 100.3ton

▸ 시설공: 와이어난간 382경간, 안내판 6개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422,260	392,402	△29,858	△7.07

❑ 심사내용

❍ 건강보험료 등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건강보험료 1.70% → 3.12%, ▸ 연금보험료 : 2.49% → 4.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5%×1.2 → (재+직노+도급자 관급)*1.85%

❍ 적용 품 조정

▸ PE다중벽관 설치품 조정 → PE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 중복품 삭제

▸ 앵커볼트 설치 품 조정

- 철골공 0.08인/개 → 철골공 0.006인/개
- 특별인부 0.009인, 보통인부 0.009인, 공구손료(3%)

▸ 데크난간 설치 수량 조정

- 목구조물 설치 수량 확인 0.124㎥/경간 → 0.0145㎥/경간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조달청 공표가격 및 시중 물가지, 견적가격 등 비교하여 낮은 가격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

○○○ 하부녹화(숲도서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구조물공: 면벽설치 H=0.5~1.95m, L=59.8㎡, 경사로 설치 2개

▸ 포 장 공: 데크포장 321㎡, 보도블럭 810㎡, 자갈부설 278㎡

▸ 식 재 공: 평떼 331㎡, 먼나무 8주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248,820	209,860	△38,960	△15.65

❑ 심사내용

❍ 적용 품 조정

▸ 데크포장 잡철물 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품 적용

▸ 교목(H2.0) 식재 품 수정

- 식재품 H3.0 적용 → H2.0 변경 적용, 조경공 0.11, 보통인부 0.09

▸ 먼나무 식재 품 조정

- 수고 식재 품 → 근원직경 식재 품 변경 적용

▸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 100m/인 · 일(보통인부 0.12인)으로 변경

▸ 앵커볼트 설치 품 조정

- 철골공 0.08인/개 → 철골공 0.006인, 특별인부 0.009인, 보통인부 0.009인, 공구손료(3%)

▸ 블럭포장 설치 품 조정 →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기계 인력 조합으로 변경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조달청 공표가격 및 시중 물가지, 견적가격 등 비교하여 낮은 가격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

○○○○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탐방로 정비 폭(1.2m), 길이 3,800m, 잡목제거 49,704㎡
- ▸ 목계단 설치 17개소(390.9m), 야자매트 폭1m, 길이 197m
- ▸ 토사유실방지목 설치 15경간, 성곽 돌채집 230.4㎥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796,201	679,800	△89,401	△11.62

❑ 심사내용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반영 0.1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5,349천원 → 1.85%

❍ 적용품 조정

- ▸ 잡목제거 품 조정 : 뿌리뽑기 공종은 산림훼손 우려가 있고 현장적용이 부적정 하므로 삭제
- ▸ 산악지 할증 조정 : 인력품의 25% 적용 → 10% 반영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조달청 공표가격 및 시중 물가지, 견적가격 등 비교하여 낮은 가격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

○○○○○ 광장형 공개공지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토　　공: 보도포장철거 627㎡, 터파기 235㎥
- ▸ 배 수 공: 트렌치측구설치 66경간, 원형수로관설치 85m
- ▸ 포 장 공: 화강판석포장 1,279㎡, ASP포장 234㎡
- ▸ 식 재 공: 돈나무 220주, 남천 430주, 상록철쭉 650주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543,399	507,039	△36,360	△6.69

❑ 심사내용

❍ 산업안전관리비 조정 등 제비율 조정

- ▸ 간접노무비 12.6% → 1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0.41% → 0.13%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5349천원 → 1.86%
- ▸ 환경보전비 0.8% → 0.3%, 기타경비 7.9% → 7.0%

❍ 적용 품 조정

- ▸ 가시나무 식재품 착오적용(R6 → R12)
- ▸ 식재공 토양개량제 수량 조정
  - 토양개량제 수량 조정, 부산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참조(p.147)
- ▸ 금목서 식재품 조정: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 수고에 의한 식재 적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조달청 공표가격 및 시중 물가지, 견적가격 등 비교하여 낮은 가격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인조잔디 교체 A = 5,707㎡, U형 측구(0.3×0.4) L = 360m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374,242	377,642	증3,400	증0.9

❑ 심사내용

❍ 원가계산 요율 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율: 3.9%→4.05%,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요율: 6.55%→7.38%

▸ 퇴직공제부금비 미반영: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2.93%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4. 기계분야 사례

《 ○○○○○ ○○○○ 악취방지지설 설치공사 ····· 61

《 ○○○○○○○○ 폐수배출시설 운영개선사업 ····· 62

《 ○○○○○ 건립 기계설비공사 ····· 63

《○○ ○○○○○ 건립 기계설비공사 ····· 64

《○○○○○ 체험홍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 65

《 2018년도 계약심사 우수사례 ····· 66

○○○○○ ○○○○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계설비공사 1식

▸ 탈취기 설치 1대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398,490	1,301,360	△97,130	△6.95

❑ 심사내용

❍ FRP DUCT 1,000mm 등 5종 25EA 가격 재조사를 통한 단가 조정

❍ FRP DUCT 물량 조정[FRP DUCT 물량 산출 시 부속자재(엘보, 티 등)의 물량이 직관 물량에 이중 반영되어 있음

▸ 1,000mm : 132.30 → 108.15m

▸ 750mm : 29.93 → 20.58m

▸ 450mm : 44.42 → 37.80m

▸ 250mm : 158.45 → 140.91m 등

❍ FRP 덕터 접합 공량 조정

접합 노무비를 100% → 95%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기계설비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 폐수배출시설 운영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자재 설치공사 1식

▸ 배관 설치공사 1식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7,916,687	7,609,728	△306,959	△3.88

❑ 심사내용

❍ 배양조 약품주입 설비 탱크류 설치품 변경: 일반기기 → 탱크조립설치

❍ 밸브 설치품 변경: 플랜트배관공사 밸브설치 →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 액화발효조 슬러지수집기 철거품 변경: 일반기기 → 잡철물

❍ 3차 처리설비 이송펌프 및 가압부상조 설비 추가

- 수중 볼류트펌프(22KW, 4.86㎥/min x 15mH) 등 7대
- 가압부상조(장방형, 2.4x12.5x2.0, STS304) 등

❍ 3차 처리설비 설치용 상판 및 가압부상설비 점검대 추가

- 상판(SS400, 22m×13.6m, 4.5t)
- 점검대(SS400, 14.93m×4.5m×0.85M, 4.5t) 등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기계설비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 건립 기계설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장비설치 공사 1식
- ▸ 위생기구 설치공사 1식
- ▸ 가스배관 공사 1식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816,006	687,664	△128,342	△15.71

❑ 심사내용

❍ 자동제어 내역삭제(물탱크, 수중펌프 등은 개별제어로 변경)

❍ 스테인리스 강관(15~80A) 할증분에 대한 고제처리 반영

❍ 급수급탕 배관공사 스텐관 용접 수량조정

- ▸ 15mm 1,289개소 → 985개소
- ▸ 20mm 242개소 → 214개소
- ▸ 25mm 549개소 → 489개소 등

❍ 시 상수도 직수 공급에 따른 관급자재 내역 삭제

- ▸ 급수가압펌프(2.2KW×10H×435LPM) 2대
- ▸ SMC물탱크(65ton, 6.5×5×2m) 1EA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기계설비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 ○○○○○ 건립 기계설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위생기구 설치공사 1식
- ▸ 장비 설치공사 1식
- ▸ 환기배관 공사 1식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443,434	421,093	△22,341	△5.04

❑ 심사내용

❍ 시 상수도 직수공급에 따른 관급자재 내역삭제 및 용량변경

- ▸ 내역 삭제 : 부스터펌프(1.5KW(2대)×30H×220LPM) 1SET
- ▸ 용량 변경 : SMC물탱크 65ton → 49.5ton

❍ 냉난방 부하조정

- ▸ 130Kcal/㎡,h 이하로 조정(탁구장 제외)

❍ 배관지지대 설치 물량 조정(물량 집계 오류)

- ▸ ㄷ형강(100×50×5t) : 181.3m → 172.2m
- ▸ 잡철물 제작설치 : 1,697kg → 1,612kg

❍ 배수펌프 및 환풍기 설치 품 품셈에 맞게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기계설비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 체험홍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비설치 공사 1식

▸ 펌프실 배관공사 1식

▸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1식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310,232	295,669	△14,563	△4.69

❑ 심사내용

❍ 펌프 진동방지장치(60~5Hp, 5조) 내역 삭제
(소방펌프 가격에 진동방지장치 포함)

❍ 밸브보온(함석마감) 설치품 변경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금속가요전선관 할증(20%) 삭제

❍ 전선 동시시공품 적용

❍ 예비회로(7회로) 할증 삭제

❍ 화재수신기 등 6종 가격 재조사를 통한 단가조정 등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기계 · 전기 표준품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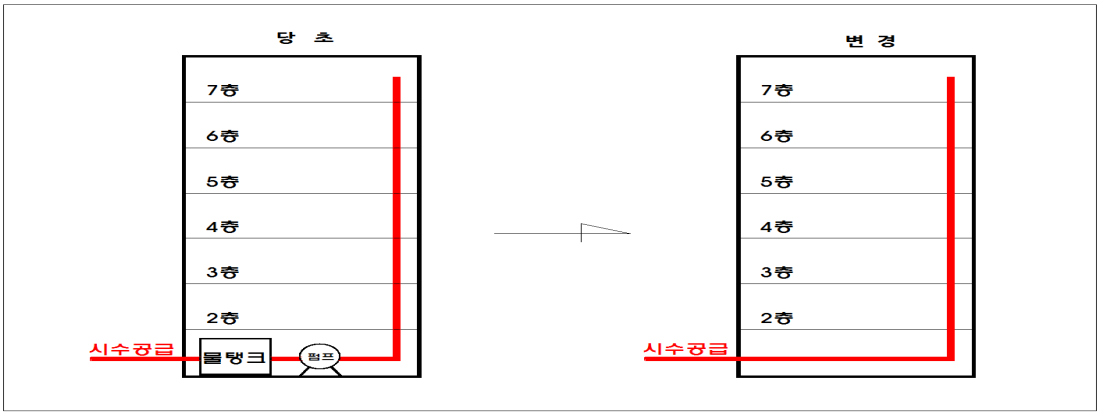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2018년도 계약심사 우수사례

❑ 사례명: 건축물 신축 시 생활용수 급수 방식 변경

❍ 사례내용

▸ 신축 건축물에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물탱크 및 가압펌프를 설치** 사용하였으나 **상수도 자연수압(4~5kg/㎠)**으로 급수 가능한 건축물은 시 상수도 직수 공급하는 것으로 급수 방법 변경을 통하여 **물탱크와 펌프 삭제로 예산절감**



※ 자연수압 5kg/㎠ 건물 높이 40m까지 급수가능

▸ 기계(펌프·모터)를 사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에서 시 상수도 직수공급 함으로 공사비, 전기료 및 유지수선비 절감.

❍ 적용사례(금234백만원 사업비 절감)

▸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선터 건립공사

▸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공사

▸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 서구 가족센터 건립공사

▸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공사 등 총 9건

5. 전기 · 정보통신분야 사례

《 ○○ 행정복지타운 건립 전기공사 ····· 69

《 ○○ 체육관 건립 전기공사 ····· 70

《 ○○ 물류도시 공원등 설치공사 ····· 71

《 ○○ 정수장 전력용변압기 설치공사 ····· 72

《 ○○ 소방서 건립 정보통신공사 ····· 73

《○○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74

《○○ 통합배선시스템 구매설치 ····· 75

《○○ 산업단지 전기공사 ····· 76

《○○ 정비사업 전기공사 ····· 77

○○ 행정복지타운 건립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력간선설비공사 1식

▸ 동력설비공사 1식

▸ 전등 전열설비공사 1식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437,277	1,368,842	△ 68,435	△ 4.76

❑ 심사내용

❍ 계산서 및 내역 조정

▸ 케이블(전선) 동시시공품 적용

▸ 공종별 앵커볼트 설치품 조정

❍ 원가계산 조정

▸ 제경비 요율 조정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름)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8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체육관 건립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력간선설비공사 1식

▸ 동력설비공사 1식

▸ 전등(경기장 조명) 전열설비공사 1식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230,279	221,213	△ 9,066	△ 3.94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수정: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 적용

❍ 품셈적용 수정

▸ 가요전선관 노출 할증(20%) 삭제

▸ 경기장 조명 자동승강조명장치 설치비 삭제

- 자동승강장치는 투광기와 일체형 장비로 투광기 설치품만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8년 조달청 가격정보

○○ 물류도시 공원등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원등 설치 328본

▸ 제어반 설치 15면

▸ 배관배선공사 1식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597,610	588,350	△ 9,260	△ 1.55

❑ 심사내용

❍ 노무비 조정

▸ 등주 내 배선품 조정: 0.016인/m ⇒ 0.014인/m

❍ 일위대가 조정

▸ 중복 계상된 베이스커버 삭제 (관급업체 제공)

❍ 원가계산 조정

▸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조정: 1.2% + 3,250천원 ⇒ 1.85% (대상액 5억 이하)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8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정수장 전력용변압기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변압기(500KVA) 및 수배전반 교체 1식

▸ 동력설비공사 1식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342,540	331,430	△ 11,110	△ 3.24

❑ 심사내용

❍ 노무비 조정

▸강제전선관 및 경질비닐전선관 적용 품셈 조정

- 5-1 전선관 배관(내선설비공사) ⇒ 4-29 강관 설치(배전설비공사)

❍ 원가계산 조정

▸ 퇴직공제부금비 삭제: 추정금액 3억원 이하 (관급자설치 관급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8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소방서 건립 정보통신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구내 통합배선설비 1식

▸전관방송설비 1식

▸구조, 구급, 화재방송설비 1식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529,806	522,057	△ 7,749	△ 1.46

❑ 심사내용

❍ 노무비 조정

▸관로구 방수 동일장소 설치품 적용

▸분배기, 분기기 옥내 80% 적용

▸TV 유니트 방수처리품 5% 삭제

▸방송단자함(구내) 적용 직종 조정: 통신케이블공 ⇒ 통신내선공

❍ 원가계산 조정

▸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조정: 1.2% + 3,250천원 ⇒ 1.85% (대상액 5억 이하)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8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사업개요

❍ 사업규모: IPBox카메라 2대, 원격장애복구기 7대 및 부대장비 교체 설치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8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71,956	61,517	△10,439	△14.51

❑ 심사내용

❍ 재료비 단가 산정

▸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등 고려하여 5개 품목 단가 조정

❍ 노무비 조정

▸ 카메라 설치품의 지세 및 위험 할증률을 품셈에 맞게 감 조정

▸ 하우징 설치 품(카메라 설치품에 포함) 전액 감 조정

▸ 송수신제어신호 및 영상LEVEL조정 품 전체 1식으로 감 조정

▸ STP케이블 및 통신용케이블 포설 품의 할증률을 품셈에 맞게 감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조달청가격, 기 심사내역 검토

❍ 2018 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

❍ 2018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통합배선시스템 구매설치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119안전센터 청사내 MDF, IDF 등 통합배선시스템 구매설치
-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46,693	40,551	△6,142	△13.15

❑ 심사내용

- ❍ 재료비 단가 산정
  - ▸ 기 심사내역, 견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6개 품목 단가 조정
- ❍ 노무비 조정
  - ▸ LED PATCH PANEL 설치품 등 3개 항목 품셈에 맞게 감 조정
  - ▸ RACK 설치품 등 3개 항목 품셈에 맞게 증 조정
  - ▸ PC 등 3개 항목 설치품 전액 감 조정(재료비에 설치비 포함)
- ❍ 경비 등 요율 조정
  -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 7개 항목 적정하게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조달청가격, 기 심사내역 검토
- ❍ 2018 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
- ❍ 2018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단지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로등 설치 431본

▸ 공원등 설치 40본

▸ 신호등 공사 1식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3,060,310	2,521,970	△ 538,340	△ 17.59

❑ 심사내용

❍ 배관 배선 품 조정

▸ 동시 배관, 배선 품 적용

❍ 중복 물량 삭제

▸ 접지동판 및 부속자재, 등주내 케이블(관급업체 제공)

❍ 시공방법 변경

▸ 횡단보도 안전등 전원 공급방법(관리주체) 변경, 신호케이블 규격변경 등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8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정비사업 전기공사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 ▸ 전력간선설비공사 1식
  - ▸ 동력설비공사 1식
-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294,064	297,572	3,508	1.19

❑ 심사내용

- ❍ 공량 조정
  - ▸ 트레이 공량 조정: 0.23인/m ⇒ 0.3인/m(3,040천원 상당 증액)
- ❍ 앵커볼트(M10) 설치품 조정
  - ▸ 내선전공: 0.08인/개 ⇒ 0.036인/개
- ❍ 원가계산 요율
  - ▸ 건강보험료: 1.7 ⇒ 3.12%
  - ▸ 연금보험료: 2.45 ⇒ 4.5%

❑ 심사근거 및 기준

- ❍ 2018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2018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 2018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6. 용역분야 사례

《 ○○ 공사 신입사원 채용업무대행용역 ····· 81

《 ○○·○○터널 청소용역 ····· 82

《 ○○ 공단 청소, 경비, 순찰 용역 ····· 83

《 ○○대로 통행료 수납업무 위탁용역 ····· 84

《 ○○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 85

《 ○○○○ 신설(확충)사업 수도노선측량 조사용역 ····· 86

《○○○ 임시청사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87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88

《○○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설계용역 ····· 89

○○ 공사 신입사원 채용업무대행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입사지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용

▸ 필기시험 문제 출제·채점, 시험장 임차 및 진행

▸ 인성검사, 면접시스템 운용 등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84,045	174,607	△9,438	△5.13

❑ 심사내용

❍ 상반기 심사금액, 관련업체 시장가격 및 재견적을 참고하여 단가 조정

▸문제, 답안지 제작 및 채점: 3,000원 → 2,500원

▸고사장 운영기획: 5,000천원 → 4,000천원

▸고사장 셋팅: 500천원 → 350천원

▸세팅 자료제작: 350천원 → 300천원

▸문제지 이송 차량: 150천원 → 130천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과업지시서

❍ 2018년 제조부분 시중노임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 · ○○터널 청소용역

❑ 용역개요

❍ 용역목적: 터널 및 관리사무소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터널 제공

❍ 용역내용

▸ 터널, 연결도로(진출입 램프) 및 관리사무소의 청소, 쓰레기 및 오물 수거

▸ 교통안전시설물(차선 규제봉, 각종 경보등, LED표지판 등) 청소

▸ 주차장 및 화단 조경 관리, 고장차량 및 교통사고 발생 등 필요시 현장정리

▸ 용역인원 6명, 청소차량 1대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18.12.31까지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75,900	155,322	△20,577	△11.70

❑ 심사내용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조정

▸ 일반관리비: 6% → 3%, 이윤: 10% → 7%

❍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감액된 금액은 인건비에 산입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 종사원 시중 노임 단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 발주

❑ 심사근거 및 기준

❍ 과업지시서

❍ 2018년도 제조부분 시중 노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 공단 청소, 경비, 순찰 용역

❑ 용역개요

- ❍ 목적: ○○공단이 관리하는 지역을 청결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유지관리 함으로써 이용객에게 위생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 대상: ○○공단이 관리하는 도로, 상가, 공원 등 28개소
-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1,919,649	11,274,847	△644,801	△5.41

❑ 심사내용

-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조정
  - ▸ 일반관리비: 6% → 3%
  - ▸ 이　　윤: 10% → 7%

※ 감액된 금액은 인건비에 산입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 종사원 시중 노임 단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 발주

❑ 심사근거 및 기준

- ❍ 과업지시서
- ❍ 2018년도 제조부분 시중 노임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대로 통행료 수납업무 위탁용역

❑ 용역개요

❍ 민간위탁 내용

▸ 통행료 수납 및 수입금 관리, 부정차량 단속업무

▸ 대체지불수단 판매(충전) 관리, 소모품 관리업무, TCS 영업설비 운영

▸ 통행료, 대체지불수단, 시재금, TCS 1차 심사, 부정·감면 특별처리차량 등 1차 심사

▸ 근무편성 및 배치, 요금소 개방, 전자카드 · 영수증 등 소요파악

▸ 고객서비스 교육, 고객응대 및 민원처리 업무

▸ 미납통행료 상담, 미납고지서 생성 및 발송업무 등

▸ 지소장 1, 반장 9, 요금징수원 76, 미납안내 4 등 90명

❍ 용역기간: 2019. 1. 1. ~ 2020. 12. 31.(2년)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4,249,240	4,117,000	△132,240	△3.11

❑ 심사내용

❍ 반장 근무시간 조정: 10시간 → 9.5시간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조정

▸ 일반관리비: 4% → 3%

▸ 이　　윤: 9% → 7%

❑ 심사근거 및 기준

❍ 과업지시서

❍ 2018년도 제조부분 시중 노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폐아스콘 1,404Ton, 슬라임(폐콘크리트) 15,073Ton
폐콘크리트 3,585Ton, 혼폐 120Ton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772,076	624,176	△147,900	△19.16

❑ 심사내용

❍ 폐기물처리장 위치 및 운반시간(t2) 조정

❍ 운반차량 조정(덤프 15Ton → 덤프 24Ton 적용)

❍ 폐콘크리트 단위중량 조정(단위중량 : 2.4t/㎥ → 2.3t/㎥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신설[확충]사업 [해동초등학교 일원] 수도노선측량 조사용역

❑ 용역개요

- ❍ 용역규모: 오수관로 L=14.67㎞ 배수설비정비 1,744가구 등
- ❍ 용역기간: 2019. 1. 1. ~ 2020. 12. 31.(2년)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06,000	98,000	△8,000	△7.54

❑ 심사내용

- ❍ 조사측량 대가 중 “보통인부“에 계상한 제경비, 기술료는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임시청사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지상3층, 연면적6,600㎡ 내외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29,800	160,800	증31,000	증23.88

❑ 심사내용

❍ 설계비 산출수정

▸ 계획설계 업무비율 반영

- 가설건축물이나 청사 건축물이므로 계획설계 업무비율 반영필요(0%→20%)

❑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용역개요

❍ 사업규모: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 서버 스토리지 등 HW 3종 58대, 백업솔루션 등 SW 10식 등 9종

▸ 예방정비 및 장애 시 복구 지원

❍ 사업기간: 계약일 ~ 2019.12.31.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154,884	121,654	△33,230	△21.45

❑ 심사내용

❍ 유지보수 요율 조정 : 견적으로 설계된 금액을 ‘2019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요율 일괄 조정

▸ HW : 9.30% ⇒ 8%

▸ SW : 18.50% ⇒ 10% (상용SW 최저 요율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9 예산편성 계획

❍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설계용역

❑ 용역개요

- ❍ 사업규모: 지상4층, 연면적 900㎡
-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율(%)
110,280	115,151	증4,871	증4.41

❑ 심사내용

- ❍ 설계비 요율 수정 : 4.2279% → 4.4621%
- ❍ 기타사항: 사전규격 공개대상이므로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 후 입찰추진하기 바람

❑ 심사근거 및 기준

-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7. 물품분야 사례

《 ○○ 본부 입상활성탄(신탄) 구매 ····· 93

《 ○○ 분기 부식재료 구매 ····· 94

《 ○○ 공사 춘계피복 구매 ····· 95

《 ○○ 공원 ○○상담실 판매용 물품 구매 ····· 96

《 ○○종묘 생산용 먹이생물 구매 ····· 97

《 ○○○음수대 제작·구매(설치) ····· 98

《 ○○ 구조장비 구매 ····· 99

《 ○○ 진입장비 구매 ····· 100

《 ○○해수욕장 양빈용 모래 구매 ····· 101

○○ 본부 입상활성탄(신탄)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입상활성탄(신탄) 2,158㎥

❍ 사업기간: 납품요구일로부터 110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2,373,800	2,158,000	△215,800	△9.09

❑ 심사내용

❍ 가격재조사 및 과년도 낙찰금액, 타시도 구입가 등을 감안하여 단가 조정

▸ ㎥당 단가 1,400,000 → 1,350,000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시중물가자료, 거래실례가격, 기 심사 내역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 분기 부식재료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식재료 가지 340kg 외 316종

❍ 사업기간: 2018. 4. 1. ~ 2018. 6. 30.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265,707	227,764	△37,943	△14.28

❑ 심사내용

❍ 심사요청 단가와 자체조사 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반영(kg당)

▸ 가지 3,650원/개 → 3,500원/개 , 감자 3,080원/개 → 2,580원/개
건대추 11,075원/개 → 10,000원/개, 고사리 4,040원 → 3,500원/개
깐마늘 9,250원/개 → 8,000원/개, 근대 3,600원 → 3,000원/개 등

❑ 심사근거 및 기준

❍ 시중물가자료, 거래실례가격, 기 심사 내역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공사 춘계피복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성하 티셔츠 199개, 춘추 티셔츠 588개, 조끼 1,614개, 하작업복 1,622개

❍ 사업기간: 작업지시일로부터 30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14,461	105,973	△8,488	△7.42

❑ 심사내용

❍ 간접노무비 조정: 25% → 10%

❍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시중물가자료, 거래실례가격, 기 심사 내역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공원 ○○상담실 판매용 물품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장의용품 70종

- ▸ 장의용품: 영락수의 등 45종
- ▸ 봉안함 등: 진공송학 자개함 등 15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287,925	246,859	△41,066	△14.26

❑ 심사내용

❍ 거래실례가격, 타부서 심사가격, 전년도 낙찰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입단가 조정

- ▸ 진공난함 95,000원/개 → 93,000원/개, 진공백자함 75,000원/개 → 73,000원/개
  수골용품 3,200원/개 → 2,800원/개, 수목장용함 21,000원/개 → 18,000원/개 등

❑ 심사근거 및 기준

❍ 시중물가자료, 거래실례가격, 기 심사 내역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종묘 생산용 먹이생물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로티퍼 1,257박스(10억개체/박스)

▸ 해수클로렐라 228박스(9 l ×2통/박스)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18.12.31.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22,775	116,636	△6,138	△5.00

❑ 심사내용

❍ 전년도 낙찰금액, 조달낙찰금액, 시중견적가격 재조사 등을 통하여 단가조정

▸로티퍼 75,000원/박스 → 71,250원/박스

▸해수산농축클로렐라 125,000원/박스 → 118,750원/박스

❑ 심사근거 및 기준

❍ 조달청 사이트, 거래실례가격, 기 심사 내역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음수대 제작 · 구매(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야외용 음수대 17대

▸ 물방울형 6대, 컵홀더형 11대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90,000	150,739	△40,027	△20.98

❑ 심사내용

❍ 외함 각 석재 음수대 몸통 173재 → 54.73재 조정

❍ 석재 가공원 37인 → 30인 조정

❍ 화물차 운반비 제외

❍ 일반관리비율 증조정: 2% → 7%, 이윤 증조정 : 5% → 10%

❑ 심사근거 및 기준

❍ 시중물가자료, 거래실례가격, 기 심사 내역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2018년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구조장비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구매내역: 건식잠수복, 수중조명등, 스노클링세트 등 9종 224점

▸목　　적: 노후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215,422	211,522	△3,900	△1.81

❑ 심사내용

❍ 심사요청단가와 시중 견적가격 재조사 단가를 비교하여 단가 조정

▸건식잠수복 3,500천원/개 → 3,450천원/개

수중조명등 1,100천원/개 → 1,070천원/개

잠수호흡기 2,260천원/개 → 2,210천원/개

부력조절기 1,250천원/개 → 1,200천원/개 등

❑ 심사근거 및 기준

❍ 시중물가자료, 거래실례가격, 기 심사 내역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진압장비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구매내역: 이동식 송배풍기 1종 22점 구매

▸목　　적: 화재 진압장비 보강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93,600	187,000	△6,600	△3.41

❑ 심사내용

❍ 심사요청단가와 시중 견적가격 재조사 및 G2B 유사 거래 낙찰액 등을 검토하여 단가 조정

▸ 이동식 송배풍기 8,800,000원/점 → 8,500,000원/점

❑ 심사근거 및 기준

❍ 시중물가자료, 거래실례가격, G2B 유사거래 낙찰액 등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00해수욕장 양빈용 모래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구매내역: 해수욕장 양빈 모래(서해사) 4,040㎥ 구매

▸목　　적: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한 양빈사업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 감액	증 · 감률(%)
199,980	195,536	△4,444	△2.22

❑ 심사내용

❍ 심사요청단가와 시중 거래가격, G2B 낙찰율 및 전년도 유사거래 심사 단가 등을 검토하여 단가 조정

❍ 모래 49,500/㎥ → 48,400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시중물가자료, 거래실례가격, G2B 유사거래 낙찰액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8. 2018년 계약심사 현황

《 공 사 현 황 ····· 105

《 물 품 현 황 ····· 123

《 용 역 현 황 ····· 144

□ 공사현황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스텐연결부속관 구매	238,196	238,196	0	0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1,398,490	1,301,380	97,110	6.94
부산 탁구체육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443,343	421,093	22,250	5.02
승강장안전문 안전발판 설치 및 구동장치 교체공사	531,934	517,387	14,547	2.74
동백천 정비사업	1,150,120	918,160	231,960	20.17
반송119안전센터 리모델링(증축)공사	1,266,495	1,096,221	170,274	13.45
우암동 소막마을 주민공동체센터 신축공사(건축)	880,597	844,226	36,371	4.13
부산문화회관 연습공간 조성사업	1,425,046	1,404,406	20,640	1.45
오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경공사	4,553,685	4,370,769	182,916	4.02
삼한맨션~과정교차로간 도로건설 전기공사	431,842	410,841	21,001	4.86
오리일반산업단지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528,042	526,126	1,916	0.36
부산 에코델타시티 전기공사(1단계 4-2공구)	448,030	448,030	0	0
부산 에코델타시티 전기공사(1단계 4-1공구)	496,880	496,880	0	0
부산 에코델타시티 정보화도시 정보통신관로 설치공사(1단계 4공구)	353,430	353,430	0	0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통신호등 설치공사(1단계 4공구)	342,120	327,330	14,790	4.32
금련 제2공영주차장 건립공사	2,248,306	2,029,648	218,658	9.73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신축공사	1,382,770	1,188,393	194,377	14.06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시설 설치공사	373,000	363,968	9,032	2.42
천마산 산복마을 흔적길 조성사업	239,407	214,307	25,100	10.48
부산탁구체육관 건립 전기공사	230,279	221,213	9,066	3.94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공사(2차)	870,950	816,073	54,877	6.3
태종대유원지 전망대 경관조명 설치공사	267,620	233,510	34,110	12.75
서동로 확장공사(7차)	435,820	415,880	19,940	4.58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새밭마을 에코하우스 조성 사업	922,976	861,706	61,270	6.64
금정산성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769,201	679,800	89,401	11.62
기장 탈수케익 저장호퍼실 개선공사	379,280	363,278	16,002	4.22
강변 악취저감사업	993,430	955,940	37,490	3.77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 소방공사	570,129	555,693	14,436	2.53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 소방공사	310,232	295,669	14,563	4.69
중부소방서 건립 기계설비공사	816,006	687,664	128,342	15.73
아트힐 커뮤니티센터 개축공사	1,067,320	1,057,310	10,010	0.94
철마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	2,035,354	1,775,305	260,049	12.78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노후 경기조명 교체공사	111,070	111,070	0	0
대저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기공사	450,670	442,930	7,740	1.72
제3처리장 저류조(#3) 보수보강공사	380,000	377,000	3,000	0.79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건립 추가공사	417,923	392,248	25,675	6.14
사상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915,905	862,413	53,492	5.84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보수	322,576	322,576	0	0
하늘(옥상)주차장 개선사업	438,810	379,320	59,490	13.56
양정~서면교차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치(조경)공사	389,345	361,072	28,273	7.26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공원 조성공사	468,200	451,500	16,700	3.57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 건립공사	1,697,009	1,492,904	204,105	12.03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	840,610	767,080	73,530	8.75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금사지구) 정비사업 전기공사	294,064	297,572	-3,508	-1.19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공사	936,689	935,025	1,664	0.18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공사	3,912,096	3,783,585	128,511	3.29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	2,973,000	2,750,300	222,700	7.49
대저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기공사	490,920	472,750	18,170	3.7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 정보통신공사	187,151	174,845	12,306	6.58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 전기공사	326,265	323,401	2,864	0.88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9년 노면표시 공사(단가계약)	500,000	500,000	0	0
가야동 보훈회관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590,115	557,473	32,642	5.53
가야동 기아자동차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21,984	591,558	30,426	4.89
가야동 KB국민은행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766,166	692,363	73,803	9.63
가야동 동의대역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31,960	599,480	32,480	5.14
대티배수지 유출입관 부설공사	222,376	216,240	6,136	2.76
아미배수지 유출입관 부설공사 구간내 아스팔트포장공사	441,698	299,012	142,686	32.3
아미배수지 유출입관 부설공사	413,951	378,278	35,673	8.62
온천5호교 바닥판 긴급보강공사	679,800	641,100	38,700	5.69
덕천3동 다복동복합센터 증축공사	1,650,000	1,586,673	63,327	3.84
2019년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337,554	337,426	128	0.04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종합공사)	2,510,650	1,998,607	512,043	20.4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전기)	324,991	314,697	10,294	3.17
대항항 정비공사	3,122,686	2,997,460	125,226	4.01
대청동 그린센터 건립공사	533,983	500,433	33,550	6.28
번영로 하부녹화(숲도서관) 조성사업(조경)	248,820	209,860	38,960	15.66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증축공사	620,205	561,729	58,476	9.43
국제산업물류단지내 문화공원 관리시설 건립공사	707,073	658,570	48,503	6.86
화전 여가녹지 조성사업	952,182	914,842	37,340	3.92
번영로 하부녹화(숲도서관) 조성사업(건축)	567,947	546,626	21,321	3.75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789,584	766,463	23,121	2.93
부산탁구체육관 건립공사	3,168,008	3,006,242	161,766	5.11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조경공사	1,146,147	1,137,601	8,546	0.75
2018년 추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사업	327,434	320,544	6,890	2.1
자성고가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 전기공사	233,013	219,153	13,860	5.95
2018년도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3차) 전기공사	893,590	704,590	189,000	21.15
수산식품특화단지 폐수배출시설 운영개선사업	7,916,687	7,609,728	306,959	3.88
대리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건축)	788,884	757,602	31,282	3.97
동래양탕장 건축 리모델링공사	558,000	504,801	53,199	9.53
1호선 22.9KV 노포변전소 미교체 변전설비 교체공사	998,919	989,204	9,715	0.97
자갈치글로벌 수산명소화 해수인입시설 설치공사	1,537,260	1,490,730	46,530	3.03
해운대처리구역 송정이송관로설치공사	8,033,977	7,594,306	439,671	5.47
양정~서면교차로간 BRT설치 전기공사	315,700	308,710	6,990	2.21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4,087,785	3,633,806	453,979	11.11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공영주차장) 건립 정보통신공사	207,384	191,335	16,049	7.74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공영주차장) 건립 전기공사	219,516	207,462	12,054	5.49
스포원 서면점 이전 설치공사	862,149	806,740	55,409	6.43
(구)성지곡 수원지댐 보수공사	1,121,000	1,034,200	86,800	7.74
오시리아(테마파크) 기반조성공사(2공구)	7,201,750	6,605,330	596,420	8.28
오시리아(테마파크) 기반조성공사(1공구)	10,293,390	9,988,030	305,360	2.97
범일교 교량기초보호공사	425,200	379,200	46,000	10.82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332,731	326,468	6,263	1.88
자유시장고객용승강기 설치공사	618,156	576,609	41,547	6.72
에코델타시티 1단계(명지동) 3공구 조경공사	5,493,600	5,465,150	28,450	0.52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원등 설치공사	327,350	325,274	2,076	0.63
문현터널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3,699,240	3,396,550	302,690	8.18
중부소방서 건립 전기공사	616,355	610,923	5,432	0.88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자갈치시장 광장형 공개공지 조성공사	543,399	507,039	36,360	6.69
덕천교차로 일원 해소사업(구포배수펌프장) 전기공사	216,590	216,200	390	0.18
중부소방서 건립 정보통신공사	317,612	309,863	7,749	2.44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일원 산성로 정비공사(2차)	383,310	368,120	15,190	3.96
제2만덕터널 비상경보설비 설치공사(2차)	324,610	323,640	970	0.3
만덕가압장 시설개선 전기공사	66,960	65,470	1,490	2.23
모라택지지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4차)	462,390	460,587	1,803	0.39
중부소방서 건립공사(건축)	5,960,400	5,696,895	263,505	4.42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공사(1공구) 구간내 상수도관 이설공사(2차)	529,540	509,955	19,585	3.7
금성동(산성마을)배수설비 정비 공사	585,080	545,600	39,480	6.75
2018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업무대행 용역	184,045	174,607	9,438	5.13
서구 가족센터 건립공사(기계소방)	463,822	445,744	18,078	3.9
동래온천 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582,340	563,660	18,680	3.21
불광산 반딧불이탐방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422,260	392,402	29,858	7.07
절영해안산책로 도로포장 및 터널내부마감공사	656,240	593,960	62,280	9.49
해양수산 복합공간(영도 해녀문화전시관) 건립공사	1,232,563	1,179,164	53,399	4.33
수영하수처리장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442,881	429,484	13,397	3.03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구축공사	299,596	297,299	2,297	0.77
다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공사	907,328	784,028	123,300	13.59
2018년 노후 어린이공원 등 정비사업	184,147	170,782	13,365	7.26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서구 가족센터 건립 건축공사	8,132,088	7,920,694	211,394	2.6
1호선 동래구간 전차선로 섹션 개량공사	499,780	511,786	-12,006	-2.4
서구 가족센터 건립 전기소방공사	235,755	235,755	0	0
서구 가족센터 건립 통신공사	215,974	205,332	10,642	4.93
서구 가족센터 건립 전기공사	637,143	625,175	11,968	1.88
대저2동 송백~동협마을간 배수로 정비공사	1,156,060	1,056,460	99,600	8.62
덕천동 ~ 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건설 조경공사	360,000	360,000	0	0
2018년 제2차 항공사진 촬영용역	162,000	162,000	0	0
영도구 2018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737,132	727,782	9,350	1.27
범일119안전센터 리모델링공사	401,165	386,199	14,966	3.73
1호선 부전~양정 전기실 배전선로 교체공사	356,180	352,460	3,720	1.04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내 상수도관이설공사(3차)	640,035	618,074	21,961	3.43
녹산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신축이음부 보수공사	1,279,500	1,278,300	1,200	0.09
망미2동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323,239	308,860	14,379	4.45
소막사 원형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926,500	779,438	147,062	15.87
대리천 생태하천 유지용수공급 전기공사	444,088	330,525	113,563	25.57
구봉산 치유숲길(2단계) 조성공사	292,690	268,863	23,827	8.14
2018년 방범용 CCTV 구축 공사	257,000	257,000	0	0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건축공사	3,351,846	3,177,034	174,812	5.22
센텀지하차도 전기실 지상이전 전기공사	108,530	106,040	2,490	2.29
수영강변지하차도 전기실 지상이전 전기공사	188,960	185,670	3,290	1.74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만덕가압장 기전설비 개선 수탁공사	84,372	80,457	3,915	4.64
북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582,047	550,000	32,047	5.51
신호 맨홀펌프장 정비사업	450,220	432,610	17,610	3.91
부산터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124,910	90,880	34,030	27.24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635,324	610,010	25,314	3.98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소방전기공사	475,180	465,582	9,598	2.02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소방기계공사	362,183	351,578	10,605	2.93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통신공사	622,380	586,950	35,430	5.69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전기공사	1,437,277	1,368,842	68,435	4.76
학장천 고향의강 조성사업(4단계) 전기공사	202,419	202,419	0	0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센터 건립 전기공사	494,591	492,061	2,530	0.51
해운대사업소 생물반응조 고도화사업 기계공사	228,630	226,960	1,670	0.73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기계공사	839,766	815,185	24,581	2.93
부산패션칼라 산업단지일원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3차)	525,940	498,740	27,200	5.17
증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479,952	474,766	5,186	1.08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조경)	1,002,672	1,002,672	0	0
평강천, 맥도강 수초제거공사(2공구)	454,468	396,494	57,974	12.76
평강천 수초 제거공사(1공구)	443,999	389,301	54,698	12.32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립 건축공사	3,179,587	3,088,564	91,023	2.86
생태공원 공공체육시설(우레탄 트랙) 개보수 공사	112,760	83,409	29,351	26.03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공사	482,185	460,834	21,351	4.43
구덕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385,016	362,429	22,587	5.87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예림마을 보호수 주변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232,398	220,769	11,629	5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752,600	749,285	3,315	0.44
명장공원 조성사업	2,000,000	1,956,990	43,010	2.15
부산역광장 국가선도 도시재생사업	1,204,258	1,190,805	13,453	1.12
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 상수도인입공사(단지외)	153,790	149,660	4,130	2.69
부산~울산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제5공구) 구간내 상수도관 이설공사	1,207,143	1,181,297	25,846	2.14
의·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배수지)(설계변경)	2,835,140	2,759,500	75,640	2.67
파워반도체사용화센터 클린룸 설치공사	6,940,000	6,645,602	294,398	4.24
서부 원심농축기 교체공사	311,620	307,590	4,030	1.29
강변하수 악취저감 차폐시설 설치공사	914,804	877,855	36,949	4.04
개금3동 DRMO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732,930	713,570	19,360	2.64
해운대사업소 원심탈수기 교체 공사	490,848	481,298	9,550	1.95
펌프 효율화 사업 공사	1,584,000	1,412,000	172,000	10.86
영주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2차)	614,000	573,900	40,100	6.53
2018년 광안대교 강교동장 보수공사(설계변경)	3,445,656	3,445,656	0	0
연제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8차)	812,200	798,100	14,100	1.74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2단계) 전기공사	3,060,310	2,521,970	538,340	17.59
양산수관교 정비공사	5,793,960	5,715,960	78,000	1.35
구포3배수지 설치공사 구간내 상수도관 부설공사	422,500	366,300	56,200	13.3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구포3배수지 설치공사 구간 내 포장복구공사(1공구)	124,600	117,900	6,700	5.38
구포3배수지 설치공사 구간내 상수도관 부설공사(1공구)	762,000	644,900	117,100	15.37
당감2배수지 설치공사 구간 내 포장복구공사(1공구)	102,520	89,870	12,650	12.34
당감2배수지 설치공사 구간내 상수도관 부설공사(1공구)	624,030	609,290	14,740	2.36
반송1동 도로및 하수시설 정비공사	248,700	247,560	1,140	0.46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862,563	1,688,863	173,700	9.33
센텀시티 지하차도 전기실 이전공사	434,016	392,997	41,019	9.45
다대4지구 급수배관 교체공사(3공구)	616,651	610,255	6,396	1.04
다대4지구 급수배관 교체공사(2공구)	497,499	490,864	6,635	1.33
다대4지구 급수배관 교체공사(1공구)	456,827	448,391	8,436	1.85
동삼2지구 온수탱크 주위배관 교체공사	419,586	417,544	2,042	0.49
덕천2지구 온수탱크 주위배관 교체공사	540,077	533,854	6,223	1.15
월드컵대로(아시아드상징거리) 보도정비공사	323,206	323,206	0	0
종합운동장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	33,322	31,590	1,732	5.2
도시철도 1-3호선 환기, 급배수, 소방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6,472,053	6,204,017	268,036	4.14
2018년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638,450	634,650	3,800	0.6
제1오존실 오존처리설비 주요부품 구입	255,505	255,505	0	0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 3공구 구간내 상수도관이설공사(2차)	378,373	377,810	563	0.15
양정~서면교차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치공사	2,537,900	2,517,700	20,200	0.8
동래구 공공시설물(건축물) 노인회관 외3개동 내진보강공사	685,715	649,033	36,682	5.35
흰여울마을 주차장 확보 및 거점센터 조성사업	482,595	455,505	27,090	5.61
춘천 일원 미차집시설 정비	710,460	696,160	14,300	2.01
국제시장 옥상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575,000	550,011	24,989	4.35
해맞이로 도로정비 공사	169,144	166,995	2,149	1.27
금샘도서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97,150	947,650	49,500	4.96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8년 숲가꾸기사업(강서구)	292,780	292,780	0	0
칠암항 오감체험 조성사업(3차)	493,670	393,410	100,260	20.31
학장천 경관개선사업	1,061,564	845,341	216,223	20.37
대저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412,000	412,000	0	0
엄광산 복지숲 조성사업	650,930	623,520	27,410	4.21
터널 비상방송 설비 설치공사(광안터널 등)	345,680	343,540	2,140	0.62
터널 진입 차단설비 설치 전기공사	21,840	21,840	0	0
2018년 동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소방공사	357,610	323,730	33,880	9.47
병동 스크린도어 설치 정보통신공사	399,172	356,508	42,664	10.69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	600,257	586,628	13,629	2.27
송도 용궁구름다리 복원사업	3,664,900	3,588,740	76,160	2.08
산배알길 풍경 특화사업	738,468	728,741	9,727	1.32
천마터널 상부 도로개설 공사	413,090	342,320	70,770	17.13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상수도관 이설공사(3공구)	770,000	765,780	4,220	0.55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상수도관 이설공사(2공구)	600,000	594,350	5,650	0.94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상수도관 이설공사(1공구)	652,000	644,680	7,320	1.12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상수도관 이설공사	1,289,806	1,282,930	6,876	0.53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3,132,801	2,902,793	230,008	7.34
르네시떼 방화셔터2단강화 변경공사(건축)	983,867	937,211	46,656	4.74
감전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285,280	280,824	4,456	1.56
2018년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공사	458,238	433,433	24,805	5.41
어린이대공원 산림유역관리사업	1,031,533	1,020,870	10,663	1.03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284,129	273,690	10,439	3.67
부산광역시 방범용 CCTV 구축사업	1,288,190	1,288,190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영도구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펌프장 건립)-건축	1,062,730	925,429	137,301	12.92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공사(전기)	1,930,598	1,826,363	104,235	5.4
괴정천유역 차집시설 정비 및 준설공사	380,830	367,180	13,650	3.58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기공사	134,150	125,190	8,960	6.68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공사(소방)	929,156	822,940	106,216	11.43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공사(정보통신)	361,770	325,530	36,240	10.02
일광이천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2차)	282,404	282,404	0	0
오시리아(테마파크) 녹지 조성공사	4,365,089	4,314,882	50,207	1.15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경공사	4,714,142	4,660,232	53,910	1.14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공사	6,767,943	6,401,266	366,677	5.42
에코장안 일반산업단지 상수도인입공사(단지내)	189,500	183,700	5,800	3.06
2018년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노후 해수설비 2차 보수공사	1,138,330	1,047,065	91,265	8.02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5,521,367	4,747,571	773,796	14.02
부산산업용품상가 화장실 보수 및 개선공사	1,288,920	1,232,276	56,644	4.4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3공구)	4,391,073	4,356,064	35,009	0.8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2공구)	5,457,838	5,379,626	78,212	1.43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1공구)	5,442,726	5,279,906	162,820	2.99
기장하수 여과설비(총인) 증설공사	1,180,140	852,042	328,098	27.8
대항동 북측진입로및 관광체험장 조성사업	3,792,900	3,542,468	250,432	6.6
생곡침출수 이송관로(2차) 정비공사	633,490	605,490	28,000	4.42
해돋이배수지 보수공사	407,130	399,870	7,260	1.78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1,330,697	1,224,180	106,517	8.01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공사(전기)	140,003	133,721	6,282	4.49
월드밸리상가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	523,780	409,143	114,637	21.89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8년도 수영구 생활안전 CCTV 구축사업	316,945	316,945	0	0
대저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	19,800	19,300	500	2.53
중앙공원내 다목적 야유회장 조성사업	2,801,679	2,738,485	63,194	2.26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2차	375,392	329,952	45,440	12.11
서면전기실~부전전기실 등 2개구간 배전선로 교체공사	338,280	338,280	0	0
부산역전기실~초량전기실 등 2개구간 배전선로 교체공사	453,440	453,440	0	0
남포전기실~중앙전기실 배전선로 교체공사	284,820	284,820	0	0
범내골변전소~양정변전소 연락송전선로 교체공사	779,220	779,220	0	0
해운대보건소 증축(별관) 건축공사	2,787,093	2,273,885	513,208	18.41
복천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건축공사	698,177	680,746	17,431	2.5
스포원 공원시설 정비공사	212,190	212,190	0	0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104,286	101,428	2,858	2.74
해운대보건소 증축(별관)공사 (전기공사)	238,380	229,740	8,640	3.62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공사	3,371,498	3,145,831	225,667	6.69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공원등 설치공사(2공구)	375,266	366,006	9,260	2.47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공원등 설치공사(1공구)	277,591	273,206	4,385	1.58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정보통신 개보수공사	112,340	108,540	3,800	3.38
남구 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98,054	91,663	6,391	6.52
송도해양레저타운조성공사(전기공사)	232,950	225,560	7,390	3.17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 전기공사(3차)	377,300	364,380	12,920	3.42
2018년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538,550	518,030	20,520	3.81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조경공사	292,363	292,363	0	0
2호선 전동차 제동제어장치 제조구매	756,589	756,589	0	0
의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기계공사	590,630	552,500	38,130	6.46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지하차도 전기실 지상이전 및 펌프감시시스템 설치공사	79,116	76,615	2,501	3.16
물금취수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4,521	4,521	0	0
화명정수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19,723	19,723	0	0
덕산 2,3정수장 간 연계관로 부설공사	742,328	741,710	618	0.08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노후 기계설비 교체공사	431,308	413,324	17,984	4.17
덕산정수장 병입수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223,982	220,924	3,058	1.37
이태석신부 기념관 건립 건축공사	2,112,486	1,990,440	122,046	5.78
신호대교 강재도장 보수공사	586,200	579,400	6,800	1.16
대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1,460,000	1,450,000	10,000	0.69
오리일반산단 조성공사 구간내 상수도인입공사	594,500	592,500	2,000	0.34
당감배수지 보수공사	370,248	379,290	-9,042	-2.44
2018년 사하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	458,974	458,974	0	0
기장하수 여과설비(총인) 증설공사 (전기부분)	109,230	111,705	-2,475	-2.27
영락교 차폐시설 설치공사	398,900	398,900	0	0
양정2동 중앙대로 일원 보도정비 공사	268,067	257,480	10,587	3.95
의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전기공사	142,516	132,616	9,900	6.95
오수관로 유지관리 긴급 보수공사 단가계약(동부권)	480,000	466,600	13,400	2.79
오수관로 유지관리 긴급 준설공사 단가계약(동부권역)	500,000	485,600	14,400	2.88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공사	895,630	720,442	175,188	19.56
서면 특성화거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 공사	523,830	490,778	33,052	6.31
기장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가로등교체) 용역	191,636	167,023	24,613	12.84
2018년 부산진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	686,053	686,053	0	0
사하구 오수관로 정비 사업	385,190	385,190	0	0
중구 오수관로 정비 사업	928,270	874,351	53,919	5.81
덕산정수장 병입수 생산라인 증설 건축공사	691,207	624,703	66,504	9.62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8년 시각장애인용 원격관리 음향신호기 설치공사	600,000	600,000	0	0
부산역 광장~초량원도심 연결 공중보행로 개설공사	1,958,959	1,849,847	109,112	5.57
녹산 주민문화회관 건립공사	4,175,351	4,002,552	172,799	4.14
녹산주민문화회관 건립 전기공사	323,013	323,013	0	0
화명정수장 고화질 CCTV 신설 및 교체공사	287,129	269,984	17,145	5.97
못골역 등 2개역 가연성 천장판 교체공사	361,960	347,700	14,260	3.94
강서기적의도서관 인테리어공사	434,263	424,512	9,751	2.25
덕천동 만덕대로116번길외2개소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500,000	470,609	29,391	5.88
롯데케슬맴버스 아파트 일원오수관로 정비공사	420,660	397,308	23,352	5.55
문현교통광장(녹지쉼터) 조성사업	507,230	494,840	12,390	2.44
화명생태공원 예초정비공사	189,409	189,409	0	0
삼락생태공원 예초정비공사	204,277	204,277	0	0
맥도생태공원 예초정비공사	218,719	218,719	0	0
대저생태공원 예초정비공사	263,048	263,048	0	0
사상고교 강선로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442,000	432,472	9,528	2.16
상마마을~금샘로 일원 도로 정비 공사(3차)	439,545	427,410	12,135	2.76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사업 용역	369,500	369,500	0	0
승강장안전문 안전보호벽 개량공사(2공구)	581,663	558,558	23,105	3.97
승강장안전문 안전보호벽 개량공사(1공구)	695,661	667,330	28,331	4.07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431,332	404,146	27,186	6.3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교대~두실 고가구간 방음시설 개량공사(4공구)	544,220	543,370	850	0.16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교대~두실 고가구간 방음시설 개량공사(3공구)	645,310	643,330	1,980	0.31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교대~두실 고가구간 방음시설 개량공사(2공구)	529,320	529,080	240	0.05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교댜~두실 고가구간 방음시설 개량공사(1공구)	286,840	286,840	0	0
부산터널 보수공사	400,000	400,000	0	0
전포로 확장공사(조경)	890,494	881,716	8,778	0.99
스포원 실내체육관 시설개보수공사	420,000	383,394	36,606	8.72
부산현대미술관 어린이 예술도서관 조성공사	493,965	468,171	25,794	5.22
제2만덕터널 보수공사	479,604	479,264	340	0.07
제1만덕터널 보수공사	500,000	500,000	0	0
`2018년 북부통합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	574,290	569,535	4,755	0.83
중부지소 시설개선 전기공사	21,220	21,880	-660	-3.11
2018년 사방사업(기장군)	317,764	317,764	0	0
해운대사업소 내진보강공사	388,410	388,410	0	0
신호대교 내진보강공사(2차)	2,721,555	2,222,098	499,457	18.35
무지개공단 일원 노후 위험 보행로 정비사업	325,200	278,720	46,480	14.29
전포로 확장 공사	1,615,500	1,493,300	122,200	7.56
정관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374,242	377,642	-3,400	-0.91
2018년 불광산 임도신설사업	412,631	412,631	0	0
재활용품 압축기 제작 설치	110,000	104,534	5,466	4.97
광안대로 디지털 CCTV 관제시스템 교체공사	598,240	555,812	42,428	7.09
내성~양정교차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치 전기공사	731,000	658,380	72,620	9.93
화명정수장 2정수여과지 전력용변압기 설치공사	143,880	132,770	11,110	7.72
서.금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287,976	290,841	-2,865	-1
서.금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287,976	290,841	-2,865	-1
동서고가로 보수공사	386,200	365,243	20,957	5.43
자갈치시장 지붕 등 전면 보수공사	332,730	317,328	15,402	4.63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8년 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안지구)	448,841	448,841	0	0
청소년수련관 ~ 달음산 자연휴양림 연결임도 개설사업	1,272,073	1,272,073	0	0
청학동 산업로 15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	473,829	473,690	139	0.03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사업	981,090	941,350	39,740	4.05
2018년 상수도 누수수리 복구공사(단가계약)	769,154	760,540	8,614	1.12
2018년 해운대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	727,313	724,074	3,239	0.45
2018년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교체공사	552,670	538,580	14,090	2.55
당감택지지구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4,458,100	4,396,300	61,800	1.39
하수찌꺼기 2차 건조 연료대체시설 설치공사	1,270,272	1,001,941	268,331	21.12
부암동 119안전세터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57,451	642,899	14,552	2.21
부암동 롯데마트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701,208	685,574	15,634	2.23
부암동 진양삼거리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67,840	651,751	16,089	2.41
부암동 부암역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71,448	655,574	15,874	2.36
양정동 백조아파트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94,207	677,211	16,996	2.45
양정동 수요양변원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57,230	641,430	15,800	2.4
양정동 하스빌딩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723,881	706,752	17,129	2.37
수정터널 상부공간연결(공원화)사업 건축공사	1,600,814	1,495,324	105,490	6.59
거제동 교대역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78,986	662,277	16,709	2.46
거제동 부산은행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584,551	567,512	17,039	2.92
거제동 진흥아파트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62,662	643,841	18,821	2.84
양정동 신거제주유소 주변 노후관개량공사	600,270	584,397	15,873	2.64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상부도로 건설공사(교통신호등)	546,276	492,893	53,383	9.77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상부도로 건설공사(전기)	268,463	260,227	8,236	3.07
양정~서면교차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치공사(조경)	316,085	316,085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내성~양정교차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치공사(조경)	735,438	732,050	3,388	0.46
부산도시철도 1호선 중앙~범내골 레일교환공사	2,264,360	2,257,150	7,210	0.32
하단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154,760	1,107,020	47,740	4.13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청과3동(농협공판장) 옥상방수공사	590,000	555,753	34,247	5.81
엄궁동 통통길 옹벽 경관개선사업	911,020	833,525	77,495	8.51
글로벌테크비즈센터건립 조경공사	984,399	982,368	2,031	0.21
온천교 일원 도로확장 공사	854,860	800,850	54,010	6.32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2,452,270	2,199,336	252,934	10.31
2018년 부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공사	3,709,440	3,649,542	59,898	1.62
2018년 부산 슬레이트지붕 개량공사	322,000	322,000	0	0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소방설비공사	375,389	335,357	40,032	10.66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기계설비공사	353,226	340,936	12,290	3.48
엄궁동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775,967	757,795	18,172	2.34
2018년 광안대교 강교도장 보수공사	3,456,524	3,439,738	16,786	0.49
상수원보호구역내 기존관로 정비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6763000	6,707,000	56,000	0.83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그라운드 조성공사	6,947,096	6,435,197	511,899	7.37
2018년 광안대교 탄산화방지공사	397,529	397,571	-42	-0.01
2018년 광안대교 강관파일 방식 보수공사	319,619	319,739	-120	-0.04
동래구 치매안심센터 설치(리모델링)공사	306,370	291,439	14,931	4.87
2018년 열수송배관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계약)	380,000	379,410	590	0.16
부곡동 희망삼차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환경 정비 공사	175,529	166,599	8,930	5.09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 재개발 전기공사	265,540	264,110	1,430	0.54
녹산고향동산기념관 건립(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1,206,449	1,123,222	83,227	6.9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	324,868	295,779	29,089	8.95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소방)	472,656	465,522	7,134	1.51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전기)	416,240	387,789	28,451	6.84
좌동2배수지 노후 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	422,517	422,517	0	0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2,158,433	2,052,961	105,472	4.89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3공구 구간내 상수도관 이설공사	784,520	768,460	16,060	2.05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간내 상수도관 이설공사	233,380	228,330	5,050	2.16
희망삼차로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공사	309,522	299,057	10,465	3.38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	314,949	307,264	7,685	2.44
부산남항 해양준설공사	793,440	738,310	55,130	6.95
해운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3,315,071	3,176,615	138,456	4.18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전기)	328,109	321,631	6,478	1.97
2018년 상수도바로서비스팀 운영사업	767,686	765,451	2,235	0.29
좌4동 문화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404,040	375,909	28,131	6.96
구남로 음악분수 조성사업	166,740	166,740	0	0
좌4동 문화센터건립 건축공사	2,472,991	2,337,056	135,935	5.5

□ 물품현황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9 다이내믹 부산 제작	1,699,200	1,636,800	62,400	3.67
2019 부산교통공사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단가계약	200,000	190,310	9,690	4.85
2019 먹이생물 구입	76,500	70,380	6,120	8
새들분수전 구매	249,340	249,340	0	0
PFP이형관 구매	968,164	968,164	0	0
PFP관 직관 구매	1,790,185	1,790,185	0	0
2019 진단검사의학과 진료재료 구입	1,730,558	1,644,030	86,528	5
스리스(게이트)청동밸브 구매	845,983	829,023	16,960	2.01
스텐이형관 구매	265,848	265,848	0	0
2019 일본어신문 발간	62,208	60,772	1,436	2.31
스텐직관구매	235,823	235,823	0	0
2019 중국어신문 발간	68,400	68,400	0	0
응급구호세트 구매	112,390	101,100	11,290	10.05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72,973	69,144	3,829	5.25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강서구 보건행정과)	64,981	61,066	3,915	6.03
2019년 용호만유람선터미널 경비, 미화 관리용역	122,893	122,893	0	0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기장군 보건소)	57,867	56,940	927	1.6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가스 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108,211	108,211	0	0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해운대 보건소 건강증진과)	152,252	141,072	11,180	7.34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사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90,000	86,427	3,573	3.97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자동화시스템 부대장비 구입	20,290	20,290	0	0
아스팔트(AP-3) 구매	300,200	271,700	28,500	9.49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간판 등 제작설치	34,539	34,539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서면지점 이전 방송장비 물품 구매 설치	186,008	186,008	0	0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동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63,000	60,870	2,130	3.38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107,998	108,655	(657)	-0.61
2019년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구매(보건환경연구원)	244,366	244,366	0	0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영도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68,829	66,068	2,761	4.01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중구 보건행정과)	55,999	51,521	4,478	8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북구 보건행정과)	91,260	88,585	2,675	2.93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수영구 보건행정과)	110,244	103,163	7,081	6.42
AW139 관련 재생가능수리부속(예비품) 구입	68,589	68,589	0	0
AW139 관련 검사장비 및 특수공구 구입	55,791	55,791	0	0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144,631	144,631	0	0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기자재 구입	33,000	33,000	0	0
대티배수지 유.출입관 부설공사 관급자재(감압밸브) 구입	30,580	30,580	0	0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GHP 냉난반기 구매	169,565	169,565	0	0
부산도시철도1호선 범어사 및 구서역 전기실 고저압배전반 제작구매	694,821	679,881	14,940	2.15
노포변전소 직류차단설비 증설분 제조구매	171,244	171,244	0	0
강관주(통신용 전주,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구매	76,824	74,470	2,354	3.06
2019년 교통안전표지 단가사업	99,699	99,699	0	0
동래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장비 구입	64,850	62,300	2,550	3.93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9년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구매	244,366	244,366	0	0
2019년 시험검사용 가스 구매(보건환경연구원)	71,247	71,247	0	0
2019년 시험검사용 환경연구부 소모품 구매	213,375	213,375	0	0
2019년 시험검사용 시약 구매(보건환경연구원)	247,775	247,775	0	0
2019년 시험검사용 감염병연구부 시약 구매	274,886	274,886	0	0
2019년 시험검사용 실험기구 구매	150,777	150,777	0	0
2019년 시험검사용 실험부자재 구매(보건환경연구원)	183,658	183,658	0	0
2019년 시험검사용 소모품 구매	180,551	180,551	0	0
구조장비(구조헬맷) 구매	34,800	34,800	0	0
수영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장비 구입	57,800	55,400	2,400	4.15
수영구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	188,642	194,677	(6,035)	-3.2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서구 보건행정과)	87,251	82,110	5,141	5.89
북구 문화예술회관 그랜드피아노 구매	24,800	24,800	0	0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매	33,250	32,900	350	1.05
기장군치매안심센터 장비(BT케어) 구입	22,000	21,500	500	2.27
음식물자원화시설 소화조공급설비 오버홀	191,978	191,978	0	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조명 장비구매	193,000	193,000	0	0
기장군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장비 등 구입	114,100	111,200	2,900	2.54
2018년 수산종자(왕우럭조개) 구매	20,000	18,462	1,538	7.69
수산종자(전복) 구매	20,000	19,306	694	3.47
수산종자(전복) 구매	20,000	19,306	694	3.47
AW139 전용 밤비버킷 구매	71,500	71,500	0	0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수설비 교체(스크류탈수기)	154,000	149,380	4,620	3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수설비 교체(플라이트 컨베이어)	209,000	202,730	6,270	3
전동차용 제륜자 3종 제조구매	300,800	275,200	25,600	8.51
1호선 전동차 공기압축기용 RADATOR 등 52종 구매	353,173	318,857	34,316	9.72
좌동2배수지 염소투입설비 제작설치 등 5건	939,389	849,299	90,090	9.59
오수정화설비내 중수 여과조 교체	157,452	135,155	22,297	14.16
2019 시각장애인용 부산이야기 제작	138,000	130,600	7,400	5.36
2019 영락공원 유족식당 물품 구매	1,989,175	1,893,585	95,590	4.81
2019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등 전산용지 제작구입	101,015	93,944	7,071	7
방사능방재 홍보 달력 제작	79,752	75,660	4,092	5.13
2019 1분기 부식재료 구매	264,484	233,399	31,085	11.75
2019 중앙공급실 진료재료 구매	1,607,278	1,559,060	48,218	3
해양환경관리 부속선(태종호) 엔진교체 수리	45,852	43,728	2,124	4.63
2019 영상의학과 진료재료 구매	308,120	305,039	3,081	1
2019 심혈관실 진료재료 구매	1,040,223	1,024,620	15,603	1.5
2019 내시경실 진료재료 구매	302,100	299,079	3,021	1
수산물안전성조사 소모품 구입	44,998	43,571	1,427	3.17
2019 영락공원 편의점 판매용품 구매	1,092,519	1,062,672	29,847	2.73
2019 영락공원 장례상담실 판매용품 구매	287,925	246,859	41,066	14.26
주례 스마트교통단속장비(다기능) 구매 설치	98,745	91,910	6,835	6.92
동서고가로 무인교통단속장비(구간단속) 구매 설치	100,470	96,931	3,539	3.52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상황판 램프 구매	29,400	28,611	789	2.68
방범용CCTV 노후함체 구매(교체) 설치	21,810	19,427	2,383	10.93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우레탄 보수공사(2차) 물품 구입	173,784	173,784	0	0
2019년 스포원 경륜출주표 제작 구매	242,913	227,205	15,708	6.47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공원녹지 잔디방제 약제 구입	73,383	71,524	1,859	2.53
친환경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콘크리트구매	35,060	31,746	3,314	9.45
2018년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54,554	54,554	0	0
산남항 서방파제 통항신호등(항만교통신호등)	50,000	50,000	0	0
차량용무전기 암호화 라이선스 구매 설치	21,485	21,419	66	0.31
1호선 전동차 RUBBER DRAFT GEAR 등 57종 구매	174,166	171,066	3,100	1.78
상곡마을BP 부스터펌프 제작설치	28,349	27,579	770	2.72
2호선 전동차 JUMPER PLUG ASS'Y 등 99종 구매	222,684	215,935	6,749	3.03
어업지도선(부산201호) 주기관 및 BOW THRUSTER 예비품 구입	84,199	80,175	4,024	4.78
2018년 부산503호 선체수리	48,989	44,423	4,566	9.32
소방정 예비부품 구매	184,149	167,702	16,447	8.93
겨울철 재난대비 모래마대 구입	21,995	21,995	0	0
2018년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3차) 조형물 제작설치	343,800	343,800	0	0
화명생태공원 덕아웃, 기록실 구매	50,600	49,500	1,100	2.17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혈압계, 체온계) 구입	78,155	78,155	0	0
화재진압 보조장비(이동식 발전기) 구매	48,750	48,000	750	1.54
치매안심센터 인지프로그램 장비 구매	38,500	37,400	1,100	2.86
글로벌영어체험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	106,497	106,497	0	0
구급대원 다기능 보호조끼 구매	107,168	107,168	0	0
심장충격기 패치 4종 구매	34,400	33,540	860	2.5
2018년 금연보조제 구매(사하구 보건행정과)	41,660	41,000	660	1.58
철새 먹이원(고구마채, 볍씨)구입	99,990	79,542	20,448	20.45
라돈측정기 구매	44,000	41,580	2,420	5.5
방범 CCTV 다기능 전원제어기 제작 및 운영 소프트웨어 커스트마이징	87,994	87,994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아스팔트(AP-3) 구매	204,957	175,678	29,279	14.29
도시공간정보 GIS S/W 추가구입	195,000	195,000	0	0
DSRC-RSE 물품구매	47,300	47,300	0	0
네트워크트래픽품질관리(QoS) 시스템 교체	273,200	273,200	0	0
2019년도 부산광역시 직무수첩 제작	58,245	58,245	0	0
사직실내수영장 관람석 의자 제작·설치	88,807	86,801	2,006	2.26
산성산악119안전센터 통합배선시스템 구매설치	46,693	40,551	6,142	13.15
1호선 노포변전소 특고압 고체절연개폐장치 제조구매	998,850	998,850	0	0
3호선 전동차 출입문 DOOR CONTROL UNIT ASS'Y 구매	214,500	203,060	11,440	5.33
부산광역시 노인회관 대강당 전광판 제작 구입설치	39,338	38,245	1,093	2.78
프리미엄효율 전동기	30,056	30,056	0	0
교통정보상황판(DLP큐브) 램프 구입	49,000	49,000	0	0
소방업무용 무전기(A/D) 구매	268,400	268,400	0	0
2018년 4분기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해운대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53,692	52,616	1,076	2
수산종자(전복) 구매	36,000	34,744	1,256	3.49
2018년 금연보조제 구매(금정구 보건행정과)	35,350	34,790	560	1.58
2018년 금연보조제 구매(수영구 보건행정과)	24,013	23,681	332	1.38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조끼(춘추복) 제조	21,539	21,539	0	0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조끼(춘추복) 제조	21,539	21,539	0	0
수산물안전성 검사 장비 구입	109,800	104,400	5,400	4.92
동계피복 제조구매	322,485	297,833	24,652	7.64
이재민구호텐트 및 비상식량 구매	67,660	64,277	3,383	5
슬러지처리용 원심탈수기 부대설비 기계공사 관급자재	144,499	135,927	8,572	5.93
건어물시장 입구 상징조형물 제조 설치	45,584	45,584	0	0
전동차용 차륜 3종 제조구매	515,415	483,117	32,298	6.27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석대매립장 배수펌프 제조구매	31,790	28,611	3,179	10
2호선 전동차 출입문 DOOR ENGINE 등 28종 구매	250,130	239,883	10,247	4.1
AW139 관련 하니웰사 전용 - 재생가능 수리부속(예비품) 5종5점 구매	837,697	837,697	0	0
중앙사업소 스컴스크린 제작 구매 교체	110,507	106,956	3,551	3.21
망분리시스템 메모리 자원 구입·설치	20,944	20,944	0	0
수처리용 외부탄소원 구매 단가 계약	173,250	148,500	24,750	14.29
1호선 비상인터폰 등 관제인터폰설비 구매 설치	211,626	211,626	0	0
교통정보전광판 모듈 교체	38,423	36,663	1,760	4.58
재난현장지휘차 전자상황시스템 교체	39,930	38,005	1,925	4.82
소방정 부산 705호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수리	55,532	50,092	5,440	9.8
친환경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콘크리트구매	46,158	41,748	4,410	9.55
동래 · 노포변전소 고압 고체절연개폐장치 제조구매	639,350	639,350	0	0
산성산악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주요장비 구매	45,534	44,614	920	2.02
AW139 제작사 전용 재생가능 수리 부속 9종 9점 구매	396,625	396,625	0	0
AW139 제작사 전용 재생가능 수리 부속 5종 5점 구매	256,857	256,857	0	0
치매안심센터 위생용품 구매	26,076	24,528	1,548	5.94
2018년 금연보조제 등 구매(강서구 보건행정과)	44,220	43,070	1,150	2.6
센텀 및 수영강변지하차도 침수대비 재난통제시스템 구매설치	121,421	121,421	0	0
수산물안전성조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47,276	44,556	2,720	5.75
순수365 한방울 야외용 음수대 제작구매	114,331	114,331	0	0
2호선 전동차 객실바닥 교체	239,524	233,772	5,752	2.4
2018년도 4분기 부식재료 구매	275,956	232,714	43,242	15.67
임대주택 LED 원형직부등 교체공사 지급자재 구매	184,365	184,365	0	0
친환경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29,830	26,980	2,850	9.55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전력케이블 제작구매 2차(1호선 노후 전력케이블 교체공사용)	350,612	350,612	0	0
(주)르네시떼 광장무대 무대조명 구매	72,182	70,378	1,804	2.5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 비료(퇴비, 살포) 구입	67,180	67,180	0	0
3호선 전동차용 주간제어기 등 9종 구매	105,024	103,124	1,900	1.81
3호선 전동차용 PANTOGRAPH ASS'Y 등 113종 구매	139,629	131,012	8,617	6.17
미포항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73,000	73,000	0	0
2018년 서구 방범용 CCTV 카메라 제작 구입	51,480	51,480	0	0
소방업무용 무전기(A/D겸용) 구매	100,100	100,100	0	0
만덕가압장 기전설비 개선 수탁공사 관급자재	325,710	312,675	13,035	4
터널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 관급자재 (라디오재방송설비)	104,188	104,188	0	0
터널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 관급자재 (비상방송설비)	28,000	28,000	0	0
북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마이크시스템	87,320	82,683	4,637	5.31
북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무대조명장비	393,520	382,770	10,750	2.73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체활동사업 등 장비구매	48,290	48,290	0	0
2018년 금연보조제 등 금연물품 구매	38,510	36,200	2,310	6
2018년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사업 장비 구매	31,950	31,330	620	1.94
2018년 벼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33,456	32,800	656	1.96
AW139 관련 검사장비 및 특수공구 24종 29점 구매	115,561	115,561	0	0
AW139 관련 검사장비 및 특수공구 8종8점 구매	115,592	115,592	0	0
방사선 감시장비 구매	63,800	61,600	2,200	3.45
2018년 금연보조제 구매(영도구 보건행정과)	27,500	26,685	815	2.96
보건소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20,546	20,546	0	0
2018년 수산종묘(말쥐치) 매입	25,000	25,000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8년 벼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155,884	155,100	784	0.5
2018년 임산부 영양제 구입	46,420	45,680	740	1.59
북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마이크 시스템 구입 설치	87,320	82,683	4,637	5.31
아스팔트(AP-3) 구매	254,800	223,300	31,500	12.3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활성탄 구입	38,610	32,500	6,110	15.83
2018년 부산광역시 직원 모니터보안기 구매	92,748	92,748	0	0
야외극장 6P 4K Laser 디지털 영사기 구매	500,000	490,000	10,000	2
부산교통정보 홈페이지 WAS서버 라이선스 구입	21,714	21,714	0	0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사업 공사용자재 잉여가스 연소용 송풍기 구매	52,800	52,800	0	0
터널 진입 차단설비 제작설치	187,660	187,660	0	0
부산터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151,613	151,613	0	0
중동배수지 염소투입설비 구매 설치	116,149	116,149	0	0
2호선 전동차용 마스콘 POSITION SENSOR 등 12종 구매	249,228	238,678	10,550	4.23
1호선 전동차 객실 통로 개방	239,566	239,566	0	0
영상표출제어기 등 7종 구매	243,400	237,460	5,940	2.44
소방공무원 피복(넥타이 등 부속물) 구매	43,803	43,803	0	0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	41,300	41,300	0	0
친환경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매	29,830	26,980	2,850	9.55
암남공원 해안경계 TOD 구매	426,330	426,330	0	0
2018년 금연보조제 구매(동래구 보건행정과)	39,500	38,435	1,065	2.7
2018년 하반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	22,126	22,126	0	0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	36,720	36,720	0	0
화재진압장비(이동식 송배풍기) 구매	193,600	187,000	6,600	3.41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8년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생리대 구입	39,000	39,000	0	0
어업지도선(부산201호) 선용품 구매	23,230	23,230	0	0
2018년 민방위 장비(방독면) 1차 구매	33,575	33,160	415	1.24
교통단속장비(이동식 속도 측정기) 구매	55,880	55,000	880	1.58
교통단속장비(이동식 속도 측정기) 구매	55,880	55,000	880	1.58
2018년 화재진압장비(소방호스2종) 구매	72,393	65,844	6,549	9.05
현장대응요원용 안전물품 구입	269,060	255,255	13,805	5.13
자성 승차권 원지 구매	281,213	272,365	8,848	3.15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27,500	122,400	5,100	4
수정산검문소(하행) 저속윔시스템 교체	47,300	47,300	0	0
도류벽 구매[의.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배수지)]	156,087	153,979	2,108	1.35
터널 진입차단설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424,600	424,600	0	0
터널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194,733	194,733	0	0
2호선 전동차 차상신호장치 5종 구매	331,650	322,245	9,405	2.84
1호선 전동차용 열번설정기 등 18종 구매	245,014	235,010	10,004	4.08
덕산정수장 제1오존실 산소뱔생기 제작 설치	799,120	799,120	0	0
지진격리받침 구매(영주고가교 내진성능보강공사(2차))	260,907	260,907	0	0
2호선 전동차 추진장치용 HSCB ASSY 등 78종 구매	644,549	598,064	46,485	7.21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급자재 산기장치 구매	25,200	25,200	0	0
2018 개관전 전 관련 작품제작	137,368	128,436	8,932	6.5
부산남항 레이다시스템 이설 물품구매	37,400	37,400	0	0
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가구 구입	27,190	27,190	0	0
2018년 쓰레기 불법투기 원격감시용카메라 신규 설치	52,082	51,813	269	0.52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8 개관전 작품재료(모듈러월) 구매·조립	47,676	44,232	3,444	7.22
1호선 노후 방송설비 제조 구매설치	492,400	444,200	48,200	9.79
아스팔트(AP-3) 구매	297,000	276,750	20,250	6.82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장비 구매	62,800	61,000	1,800	2.87
카라반(이동형119구급센터) 구매	59,000	59,000	0	0
수산종자(동남참게) 구매	20,000	19,500	500	2.5
대기오염측정소 쉘터 구매	21,890	21,890	0	0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약제 구매	69,961	68,334	1,627	2.33
망미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구성장비 구매	45,534	44,694	840	1.85
개인보호장비(안전장갑) 구매	57,935	57,456	479	0.83
2018년 금연보조제 구매(연제구 보건행정과)	29,220	27,965	1,255	4.3
해수욕장 양빈용 모래 구입	199,980	195,536	4,444	2.22
2018년 금연 행동강화물품 등 구매	26,645	25,635	1,010	3.79
2018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매	22,580	22,380	200	0.89
신규 다목적소방헬기 정비용 작업대 구매	22,000	22,000	0	0
수산종자(전복) 구매	40,000	38,604	1,396	3.49
3분기 부식재료 구매	281,170	231,197	49,973	17.77
장산 등 3개 역사 고주파 정류기 및 이동형 비상전력 공급장치 구매	147,950	143,154	4,796	3.24
2호선 고주파 정류기 모듈 등 12종 구매	147,220	143,170	4,050	2.75
입상활성탄여과지 수질계측기 제작구매설치	107,030	107,030	0	0
공정별 수질계측기 구매설치	48,400	47,520	880	1.82
원수수질감시용 수질계측기 구매제작설치	41,360	41,360	0	0
1호선 전동차 공기압축기용 토,흡입밸브 등 4종 구매	133,400	122,280	11,120	8.34
슬러지처리장 열탈수기 여과포 등 2종 구입	65,800	61,300	4,500	6.84
4호선 전동차용 COLLECT SHOE 구매	240,640	230,400	10,240	4.26
수변전실 저압반 변압기 제작교체	136,640	127,500	9,140	6.69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1호선 전동차 축상용 베어링 등 13종 구매	183,583	169,441	14,142	7.7
정수제어시스템용 현장제어반(RCS) 부품 구입 교체	98,164	98,164	0	0
영구임대주택 수배전반(MCC반) 제작 설치	550,482	542,670	7,812	1.42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 전기공사(3차) 관급자재 제작 구입	181,720	181,720	0	0
2018년 방범용 CCTV 11단계 CCTV 제작구입	390,500	390,500	0	0
18년 어업지도선 부산 201호 선제 정기수리	86,970	79,530	7,440	8.56
18년 어업지도선 부산201호 기관 정기 수리	82,973	72,452	10,521	12.68
매리취수장 제2펌프장 취수펌프 기동용 리액터	39,578	39,578	0	0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배전반 제작 구매 설치	136,081	136,081	0	0
2호선 전동차 차상신호장치 5종 구매	490,600	475,585	15,015	3.06
녹산하수소화조 설치사업 펌프류 구매	24,175	24,175	0	0
미세먼지 정보표출시스템 구매	179,660	179,660	0	0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구매	88,000	82,000	6,000	6.82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용 피복 구입	21,770	20,685	1,085	4.98
다목적 소방 오토바이 구매	35,400	35,400	0	0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충전함 구매	59,400	59,400	0	0
환경방사선감시장비 구매	123,200	118,360	4,840	3.93
벼 병해충 방제약제 구매	54,751	53,416	1,335	2.44
보수종합시장 지주간판 제작설치	21,985	21,985	0	0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아치간판 제작설치	51,715	51,715	0	0
119수상구조대 직원용 피복 구입	21,770	20,685	1,085	4.98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 인조잔디 구매	254,320	231,200	23,120	9.09
수산종자(전복) 구매	45,000	43,430	1,570	3.49
2018년 금연보조제 구매(기장군 보건행정과)	34,270	33,157	1,113	3.25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충전함 구매	39,600	39,600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네트워크 내부서버팜 L3 스위치 확장부품 구매 설치	64,317	62,345	1,972	3.07
실내수영장 신설기계실 여과기 여과재 구입	38,135	36,777	1,358	3.56
네트워크트래픽품질관리(QoS) 시스템 교체	273,200	273,200	0	0
부산산업용품상가 방범CCTV 제작 설치	112,070	107,920	4,150	3.7
2018년도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노후화장비 교체	71,956	61,517	10,439	14.51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49,113	49,113	0	0
수산물안정성조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35,103	33,006	2,097	5.97
순수365 한방울 음수대 제작 설치	190,000	150,739	39,261	20.66
수술용 현미경 등 22종 구매	1,476,329	1,454,184	22,145	1.5
순수365 한방울름수대 제작 구매	113,000	113,000	0	0
2018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매	27,636	27,636	0	0
2018년 다이내믹 부산 제작	633,600	625,920	7,680	1.21
소내용 변압기 제작구매	270,100	270,100	0	0
고압배전용 변압기 제작구매	2,045,100	2,045,100	0	0
아시아드 주경기장 관람의자 교체	40,304	40,304	0	0
엔진양수기 구입	42,152	42,152	0	0
고휘도 유리알 구매	90,000	81,000	9,000	10
질산화여재 구매	549,120	549,120	0	0
노후 교통정보전광판(VMS) 제작 교체 설치	188,514	185,740	2,774	1.47
2018년 교통정보CCTV 제작·교체 사업	99,890	99,890	0	0
해돋이배수지 보수공사 관급자재구매(향균 PE시트)	80,990	75,238	5,752	7.1
2호선 TWC용 기지국 장치(K-BS) 1종 구매	167,300	163,800	3,500	2.09
1호선 전동차 차상지상정보송수신장치 양방향통신 개량	1,464,900	1,464,900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삼락공원 지하차도 전기공사(원격자동제어반 제작 설치)	47,236	47,236	0	0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급자재 송풍기외 1종 구매	68,212	68,212	0	0
덕산정수장 수질계측기 구입교체	334,947	334,947	0	0
강변대로1,3 중계펌프장 벨트켄베이어 구매	25,600	25,600	0	0
부산시 청사 CCTV설비 제작 구입설치	109,989	108,036	1,953	1.78
복천·시립박물관 IP전화시스템 구매설치	49,703	48,753	950	1.91
수처리용 외부탄소원 구매 연간 단가 계약	189,888	170,280	19,608	10.33
공용차량(5인승 밴) 구입	26,320	26,320	0	0
어업지도선(201호) 기관 부품 구입	63,447	58,437	5,010	7.9
1호선 전동차용 주공기압축기 1종 구매	270,000	260,100	9,900	3.67
니켈카드뮴 축전지 구매	188,255	181,285	6,970	3.7
파스콘트라프 제작구매	540,438	540,438	0	0
전력케이블 제작구매	1,304,823	1,304,823	0	0
1호선 정동차 판타그래용 습판체 등 316종 구매	741,217	688,562	52,655	7.1
수질원격감시체계(TMS설치) 제작구입	218,000	218,000	0	0
레일도유기 제작구매	148,928	128,000	20,928	14.05
당감배수지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매-상수도구조물전용수조타일 등	274,476	269,749	4,727	1.72
3호선 전동차 브레이크조립체 등 53종 구매	201,580	189,914	11,666	5.79
화명정수장 고분자 응집재 자동용해장치 교체	128,561	113,090	15,471	12.03
어업지도선(부산201호) 주기관 예비부품 구입	49,163	45,424	3,739	7.61
강관주(통신용전주,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구매	115,528	108,294	7,234	6.26
명장정수사업소 CCTV설비 구매설치	186,002	173,982	12,020	6.46
市 방사선 감시시스템 추가확보·강화	344,813	341,695	3,118	0.9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방화벽로그서버 및 보안관제서버 하드디스크 구입	21,938	21,938	0	0
공영주차장 IC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 설치	171,728	168,293	3,435	2
인터넷·업무망 분리시스템 구축	474,786	467,664	7,122	1.5
민방위 경보단말(사이렌) 구매·설치	39,990	39,264	726	1.82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제작 구매설치	272,629	257,400	15,229	5.59
문화관광 홈페이지 시스템 디스크 구입	34,500	34,500	0	0
민방위 경보단말(사이렌) 노후 장비교체 구매설치	639,649	621,613	18,036	2.82
서·금사지구 우수저류시설 영상감시시스템 제작 설치	36,762	30,426	6,336	17.24
덕산 제1입상활성탄 회수지 예비전원용 케이블 구매	32,504	28,971	3,533	10.87
4호선 전동차용 타이어 구매	241,920	235,200	6,720	2.78
오존처리설비 주요부품구입	52,800	50,820	1,980	3.75
먹이생물 알테미아 구입	45,375	43,106	2,269	5
부산의료원 국고지원장비 구매	907,250	888,000	19,250	2.12
2018 상반기 수산종자 생산자재 구입	69,067	66,531	2,536	3.67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 설치	82,720	77,000	5,720	6.92
1-3호선 전동차 객실시트 수선	269,965	260,222	9,743	3.61
미립자사료 구입	32,428	30,800	1,628	5.02
화재조사기자재(오실로스코프) 구매	28,000	28,000	0	0
화재조사기자재(인화점측정기) 구매	27,500	27,500	0	0
2018년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매	28,689	26,624	2,065	7.2
2018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매	64,925	62,200	2,725	4.2
강관1수1악정자관 구매(부암동 롯데마트주변 노후관 개량)	31,350	22,095	9,255	29.52
강관1수1악정자관 구매(부안동 부암역 주변 노후관 개량)	31,350	22,095	9,255	29.52
강관1수1악정자관 구매(양정도 한스빌딩 주변 노후관개량)	25,080	17,676	7,404	29.52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고주파 정류기 모듈 등 7종 구매	452,920	435,578	17,342	3.83
지사배수지 염소투입설비제어반 제작 교체	48,100	48,100	0	0
2018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구매	35,270	35,118	152	0.43
2018년 금연보조제 구매(남구 보건행정과)	49,190	48,160	1,030	2.09
영도마린축구장 인조잔디 구매 설치	489,528	485,344	4,184	0.86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계류시설 구입	49,906	49,906	0	0
마을공동 농기계(로보랙터) 구매	100,640	100,640	0	0
2018년 금연보조제 및 행동물품 구매	32,100	29,600	2,500	7.79
2호선 AF궤도회로장치(TU F2 등 7종) 제조구매	298,040	291,940	6,100	2.05
산성산악119안전센터 화재진압장비 구매	133,486	128,917	4,569	3.42
산성산악119안전센터 구조장비 구매	69,994	67,218	2,776	3.97
2018년 벼 육묘용 상토 구매	64,000	62,958	1,042	1.63
2018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59,360	57,090	2,270	3.82
배기가스측정기 구매	49,995	49,995	0	0
오디토리움 무대기계(바텐) 활차 및 와이어로프 제작설치	150,000	150,000	0	0
감염병 진단용(큐열, CRE) 시약 구매	29,268	29,268	0	0
금연 행동요법제(구강청량제) 7종 구매	24,950	23,230	1,720	6.89
수산종자(왕우럭조개, 동남참게) 구매	45,000	43,000	2,000	4.44
임업기계장비(소형굴삭기) 구입	77,000	76,500	500	0.65
시험검사용 장비(자동핵산추출기) 구매	30,000	30,000	0	0
2018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25,470	24,690	780	3.06
2018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56,210	55,114	1,096	1.95
2018년 금연보조제 구매(부산진구 보건행정과)	50,945	48,990	1,955	3.84
낙동강119수상구조대 구조장비 (로프 발사총 등 4종) 구매	42,500	41,900	600	1.41
구덕마을 상징게이트 제작설치	53,000	51,170	1,830	3.45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 제작부착	93,280	93,280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수산종자 해삼 구매	20,000	20,000	0	0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구매	140,250	110,100	30,150	21.5
에스컬레이터 소프트스타트 등 186종 구매	323,208	293,734	29,474	9.12
엘리베이터 인버터 등 233종 구매	369,578	315,806	53,772	14.55
일광공공하수시설 기계공사 관급자재 펌프류외 4종 구매	198,716	189,032	9,684	4.87
전동차용 라바세브론 4종 구매	501,120	477,120	24,000	4.79
제1만덕터널 노후 제트팬 제작 교체	227,650	205,095	22,555	9.91
궤도선형검측기 구매	115,000	107,800	7,200	6.26
지진격리받침구매 (신호대교 내진보강공사 2차)	972,845	922,002	50,843	5.23
가압장,배수지 CCTV운영설비 교체	92,994	81,180	11,814	12.7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이중화 구축	327,250	321,200	6,050	1.85
여과집진기 필터백 세트 제작 구매	114,920	112,148	2,772	2.41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5,696	22,558	3,138	12.21
명지사업소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촉매 제작 구입	296,559	290,267	6,292	2.12
고압 하수관로 대형세정차량 제작 구입	297,400	297,400	0	0
침출수처리용 분말활성탄 kg당 연간 단가계약	321,750	316,875	4,875	1.52
2018년 소방관서 인터넷전화 구축사업	94,898	92,355	2,543	2.68
분말활성탄 외 1종 톤당 단가계약	170,280	168,560	1,720	1.01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성능개선사업	38,546	36,314	2,232	5.79
이동식 축(윤)중기 구입	88,000	88,000	0	0
복천박물관 노후 동력제어반 및 분전반 제작교체	88,290	88,290	0	0
서동외 2개소 노후 펌프 교체	40,425	40,425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화명정수장 수처리 여과재 구매	41,889	41,098	791	1.89
여과재 구매	134,126	133,240	886	0.66
수산종자 생산용 산소발생기 교체	39,031	35,115	3,916	10.03
2018년도 2분기 부산의료원 부식재료 구매	265,707	227,764	37,943	14.28
2호선 구형 폴사인 교체	116,610	113,100	3,510	3.01
화명정수장 오존실 후오존 접촉조 산기관 구매	43,560	41,580	1,980	4.55
실험용 세척기 구매	44,000	42,900	1,100	2.5
액화염소용기 구매	277,200	246,600	30,600	11.04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방음시설 설치 공사(2공구)관급자재 구매	285,840	285,840	0	0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방음시설 설치 공사(1공구)관급자재 구매	332,612	332,612	0	0
좌동2배수지 노후시설 교체사업 (크레인 교체)	89,760	84,340	5,420	6.04
구조장비(퀵드로우 등 18종) 구매	204,537	197,890	6,647	3.25
구조장비(아이젠 등 24종) 구매	239,229	231,920	7,309	3.06
구조장비(승강기 비상키 등 20종) 구매	317,172	306,770	10,402	3.28
구조장비(반지절단기 등 21종) 구매	180,731	175,860	4,871	2.7
구조장비(고무보트 등 3종) 구매	281,100	273,000	8,100	2.88
구조장비(건식잠수복 등 9종) 구매	215,422	211,522	3,900	1.81
구조장비(공기안전매트(저층용) 1종) 구매	78,400	78,400	0	0
관보온 단열재 구매(호포수관교 상수도관 정비공사)	290,041	215,598	74,443	25.67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4종) 구매	779,744	779,744	0	0
1호선 전동차 TM용 카본브러시 등 2종 제작 구매	235,516	223,505	12,011	5.1
2018년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 편찬	49,135	48,432	703	1.43
재활용사업소 지게차 4.5톤 구매	54,901	53,130	1,771	3.23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덕산정수장 슬러지동 케익호퍼 교체	332,200	295,680	36,520	10.99
방사능방재 개인방호복세트 구매	59,400	54,000	5,400	9.09
2018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26,690	26,380	310	1.16
매리취수장 제2펌프장 고압펌프모터 제작교체	240,000	240,000	0	0
2호선(광안,장산) 신호기기실 축전지 구매	211,624	196,446	15,178	7.17
2018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소모품 구매	63,737	61,319	2,418	3.79
부산현대미술관 개관전I 수직정원	164,583	129,831	34,752	21.12
2018년 교육훈련장비(구급) 구매	103,300	100,914	2,386	2.31
2018년 교육훈련장비(화재,구조) 구매	141,440	137,760	3,680	2.6
2호선 전동차 추진제어장치 제조구매	1,074,000	972,000	102,000	9.5
소방업무용 무전기 구매	365,381	359,260	6,121	1.68
복합강체 전차선 제조구매	135,000	135,000	0	0
후두경세트 등 22종 구매	323,351	310,996	12,355	3.82
백밸브마스크 등 22종 구매	176,439	170,482	5,957	3.38
심전도감시장치 등 2종 구매	152,900	148,313	4,587	3
폐쇄형배전반 제조구매	130,848	128,894	1,954	1.49
전동차용 차륜 3종 구매	549,586	515,147	34,439	6.27
분석용 초정밀저울 구매	50,000	50,000	0	0
정화장치(무방류시스템 구입)	55,020	53,920	1,100	2
중앙하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질량식유량계 교체)	45,012	45,012	0	0
중앙하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PLC 모듈 구매)	34,986	34,986	0	0
차량 및 기술분야 춘추피복 제조 구매	114,461	105,973	8,488	7.42
고압증기멸균기 등 2종 구매	80,000	73,060	6,940	8.68
2018 수질시험용 시약 및 시험용품 등 단가계약	206,720	202,290	4,430	2.14
2018 부산문화글판 디자인 제작 설치	59,905	59,905	0	0
2018 수산종묘 생산용 먹이생물 구매	122,775	116,636	6,139	5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일산화탄소측정기 등 3종 구매	268,400	257,400	11,000	4.1
비디오후두경 등 4종 구매	255,310	247,430	7,880	3.09
2018 입상활성탄(신탄) 구매	2,373,800	2,158,000	215,800	9.09
기계식가슴압박장비 구매	330,000	319,000	11,000	3.33
2018년 에이즈검사용 시약 단가계약	31,185	31,185	0	0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성능개선	34,581	32,943	1,638	4.74
아스팔트(AP-3) 구매	262,350	237,600	24,750	9.43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제조구매	123,987	123,987	0	0
2018년 응결제 구매 톤당 연간 단가계약	223,876	223,876	0	0
노면파쇄기 구입	643,500	627,000	16,500	2.56
노후 테이프 백업장치 교체	66,000	62,000	4,000	6.06
영상감시설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49,390	42,251	7,139	14.45
황산알루미늄 연간 단가계약	142,679	142,679	0	0
차아염소산나트륨 연간 단가계약	127,050	127,050	0	0
외부탄소원 연간 단가계약	889,800	863,106	26,694	3
외부탄소원 Kg당 단가계약	106,920	106,920	0	0
가성소다(25%) 단가계약	247,104	237,600	9,504	3.85
휴대용인공호흡기 구매	352,000	341,000	11,000	3.13
오존처리설비 주요부품 구입	77,000	61,600	15,400	20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견인전동기 수선	211,200	198,720	12,480	5.91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구매	290,400	280,500	9,900	3.41
수산종묘(전복) 구입	166,000	162,094	3,906	2.35
임상병리검사실 검사시약 구입	85,537	83,774	1,763	2.06
중리지구 보행환경 조성사업 상징조형물 제작	148,620	139,850	8,770	5.9
2018 시민나무심기 행사 수목구입	74,968	74,968	0	0
물금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636,076	636,076	0	0

사업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명장정수장 제1펌프장 송수펌프 교체	46,322	46,322	0	0
2호선 전동차 지붕도막재 교체	314,889	314,889	0	0
심장충격기패치 5종 구입	29,953	29,594	359	1.2
GNSS 측량장비 구입	31,500	31,500	0	0
2018년도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24,000	23,352	648	2.7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구입	31,500	31,120	380	1.21
2018년 출산용품 지원사업	255,000	248,115	6,885	2.7
화명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송수펌프 제작교체	229,171	219,431	9,740	4.25
화명정수장 여과지 정수밸브 전동구동장치 교체	171,872	165,497	6,375	3.71
청학가압장 펌프모터 및 밸브 교체	99,700	95,300	4,400	4.41
사상가압장 비효율 펌프모터 제작설치	174,999	174,999	0	0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기장군 보건행정과)	66,039	63,071	2,968	4.49
시험검사장비(실시간유전자증폭기) 구입	46,000	46,000	0	0
2018년 출산축하용품 구매	215,000	209,195	5,805	2.7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물품 구입 (수영구 보건행정과)	113,000	110,043	2,957	2.62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사하구 건강증진과)	83,720	81,186	2,534	3.03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사상구 보건행정과)	67,970	63,929	4,041	5.95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연제구 보건행정과)	114,413	113,886	527	0.46
유인송풍기용 고압 인버터 제작구매	144,714	144,714	0	0

□ 용역현황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1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35,583	301,174	34,409	10.25
2019 상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용역	6,025,804	6,025,804	0	0
2019년 북부통합사업소 블록유수율 유지관리용역	235,000	235,000	0	0
2019년 교통정보CCTV 유지보수 용역	159,221	159,221	0	0
2019년 상수도급배수관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64,932	164,129	803	0.49
2019년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70,000	170,000	0	0
2019 부산시설공단 청소, 경비용역	11,919,649	11,274,847	644,802	5.41
2019년 발매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53,048	250,188	2,860	1.13
통합의료정보시스템유지보수 용역	154,884	121,654	33,230	21.46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용역	820,000	810,000	10,000	1.22
2019년 감만창의문화촌 청소경비용역	220,070	220,070	0	0
중부소방서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796,840	796,840	0	0
2019년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점검 관리 용역	209,980	209,980	0	0
2019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2지역)	334,443	334,443	0	0
2019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1지역)	344,655	344,655	0	0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공사 상주감리 용역	125,730	125,730	0	0
남부하수 에너지자립화 및 녹산하수 가스 발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99,000	799,000	0	0
1호선 신조전동차 48량 제작감독 용역	651,200	651,200	0	0
2019 부산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위탁검사 용역	304,171	295,046	9,125	3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171,531	171,531	0	0
2019 부산의료원 장의용품 구매	115,196	103,676	11,520	10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31,350	123,469	7,881	6
2019 부산의료원 취사원 도급 용역	1,269,591	1,205,104	64,487	5.08
2019년 교통신호운영 및 경정비 통합관리 용역	856,000	856,000	0	0
2019년 시립미술관 청사 청소 용역	267,102	245,649	21,453	8.03
2019년 시립미술관 전시관리 용역	552,000	552,000	0	0
2019년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청소 용역	228,000	228,000	0	0
구덕운동장 경비 용역	183,837	183,837	0	0
충렬사관리사무소 청소 용역	190,000	190,000	0	0
2019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청소 용역	383,500	383,500	0	0
기장체육관 시설위탁관리 용역	794,907	794,907	0	0
강서체육공원 시설관리 용역	1,067,839	1,067,839	0	0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용역	3,350,552	3,350,552	0	0
2019년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용역 톤당 단가계약	7,278,830	7,176,810	102,020	1.4
2019년도 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차 용역	140,000	140,000	0	0
BRT사업에 따른 시청역 및 양정역 환기구 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81,170	181,170	0	0
도시관리계획(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3차) 용역	130,000	130,000	0	0
대저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772,076	624,176	147,900	19.16
삼한맨션~과정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61,680	347,710	13,970	3.86
삼한맨션~과정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023,000	1,023,000	0	0
식만~사상간[대저대교]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9,043,000	9,043,0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동천수계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61,671	1,236,294	25,377	2.01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수산식품특화단지 폐수배출시설 운영개선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776,600	704,000	72,600	9.35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378,300	1,350,030	28,270	2.05
인재개발원 청사관리위탁 용역	720,963	720,963	0	0
2019년 화명·덕산·명장정수사업소 정수슬러지 운반처리용역	2,072,842	1,997,655	75,187	3.63
폐활성탄 운반처리 용역	150,499	148,940	1,559	1.04
광안대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4,249,240	4,117,000	132,240	3.11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297,867	274,740	23,127	7.76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보덕포 상류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859,700	859,700	0	0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816,000	1,816,000	0	0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 용역	600,000	600,0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보덕포 상류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1,897,000	1,897,0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양정동 일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195,437	1,126,347	69,090	5.78
해운대처리구역 송정이송관로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3,390	193,116	10,274	5.05
부산탁구체육관 건립공사 상주감리용역	157,960	157,960	0	0
문현터널 상부 공원화 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424,050	424,050	0	0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408,100	403,960	4,140	1.01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동주여고일원)기본및 실시설계용역	150,000	143,200	6,800	4.53
영도대교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89,430	171,940	17,490	9.23
중부소방서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76,991	176,991	0	0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공공주택건설사업 등 9개 사업 마케팅조사 및 사업성분석 용역	237,000	237,000	0	0
2018년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대여유물 운송 용역	214,540	208,660	5,880	2.74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 서부처리구역(가락처리분구일원)기본및실시설계용역	610,000	610,0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 서부처리구역(대저처리분구일원)기본및실시설계용역	827,000	827,0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사상구 제척지일원) 실시설계역	720,000	720,0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해동초등학교일원) 수도노선측량 조사용역	106,000	98,000	8,000	7.55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21,000	321,0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양정동 제척지일원) 실시설계용역	345,000	344,000	1,000	0.29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망미, 수영동일원) 실시설계용역	771,000	771,0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거제, 연산동일원) 실시설계용역	820,000	820,000	0	0
부산남항 수제선 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990,000	990,000	0	0
동래온천 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123,830	120,270	3,560	2.88
부산광역시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361,000	361,000	0	0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 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428,417	390,698	37,719	8.8
정보화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재해복구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20,000	214,000	6,000	2.73
다목적소방헬기 입자분리기 추가 장착 외주정비 용역	414,802	414,802	0	0
2018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용역	118,725	118,725	0	0
부산교통공사 역사 환기덕트 청소용역	171,219	161,044	10,175	5.94
2018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150,000	146,800	3,200	2.13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흰여울문화마을 일원 안전한 유지관리 방안제시 연구용역	149,903	139,105	10,798	7.2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2차)폐기물처리 용역	104,110	104,110	0	0
서구 가족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585,186	585,186	0	0
기장하수처리장 여과설비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0,000	150,000	0	0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용역	154,300	154,300	0	0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	270,550	270,550	0	0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31,516	131,516	0	0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310,123	310,123	0	0
부산남항 물양장 확충사업(2차)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55,200	155,200	0	0
동래구 임시청사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9,800	160,800	(31,000)	-23.88
부산도시철도 역사 시설개량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172,300	172,300	0	0
동서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용역	680,900	680,900	0	0
BTC 및 3-4호선 모의운전연습기 유지보수 위탁용역	269,496	242,853	26,643	9.89
해운대처리구역 송정이송관로 건설사업관리용역	805,000	805,0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남부처리구역(동천수계 일원)]건설사업관리용역	2,193,800	2,193,8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수영처리구역(양정동 일원)]건설사업관리 용역	2,188,530	2,188,530	0	0
명지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41,716	391,237	50,479	11.43
덕천교차로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1,878,000	1,783,000	95,000	5.06
2018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용역	119,500	119,500	0	0
2018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용역	174,900	174,900	0	0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서부권역 노후 압송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용역	200,000	200,000	0	0
동부권역 노후 압송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용역	200,000	200,000	0	0
부산남항 물양장 확충사업 2차 건설사업관리 용역	1,315,000	1,315,000	0	0
부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서부권역)	850,400	846,600	3,800	0.45
부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동부권역)	798,800	795,200	3,600	0.45
부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중부권역)	850,800	847,000	3,800	0.45
노포동 고분군 2차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239,000	239,000	0	0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444,610	444,610	0	0
오르미 복합문화주차타워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4,725	151,310	13,415	8.14
수영구 도서관 재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12,261	631,598	80,663	11.33
맥도생태공원 조경관리용역	178,199	178,199	0	0
대저생태공원 조경관리용역	229,641	229,641	0	0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	397,166	397,166	0	0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실시설계 용역	178,978	170,681	8,297	4.64
맥도생태공원 시설물 관리용역	186,054	186,054	0	0
대저생태공원 시설물 관리용역	186,054	186,054	0	0
을숙도 공원관리 용역(철새공원)	258,000	258,000	0	0
을숙도 공원관리 용역(생태공원)	185,000	185,000	0	0
동래구 신청사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395,800	2,395,800	0	0
감전~주례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58,312	158,202	110	0.07
사상~감전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46,058	145,981	77	0.05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덕포~사상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53,329	153,296	33	0.02
동대신~토성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58,675	158,565	110	0.07
대티~동대신 이 3개구간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247,884	1,242,593	5,291	0.42
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382,600	2,382,600	0	0
양정~서면교차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380,900	380,9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남부처리구역(광안,남천동 일원)실시설계 용역	540,000	540,000	0	0
효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326,500	326,5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영도처리구역(동삼,청학동 일원)실시설계 용역	560,000	560,000	0	0
식만~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 용역	310,000	310,000	0	0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청소용역	130,000	115,304	14,696	11.31
구덕운동장 경비관리 용역	93,380	86,826	6,554	7.02
2018년 해양자연사박물관 외 1개소 청소 용역	106,266	102,366	3,900	3.67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 관리용역	205,407	205,407	0	0
광안대교 강교도장 보수공사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148,004	148,004	0	0
배산성지 2차 발굴조사 및 복원 용역	295,700	295,100	600	0.2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3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688,353	688,353	0	0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2공구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2차)	1,072,900	1,072,800	100	0.01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2공구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2차)	1,410,900	1,410,000	900	0.06
어린이대공원 청소년 체험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67,000	167,000	0	0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수영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300,000	286,000	14,000	4.67
양산수관교 정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445,070	446,930	(1,860)	-0.42
구포3배수지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099,823	1,099,090	733	0.07
당감2배수지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074,640	1,073,904	736	0.07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72,900	617,988	54,912	8.16
공공주택건설사업 등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	230,692	230,692	0	0
해운대 열수송배관 기본.정밀진단용역	198,400	198,400	0	0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4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91,890	391,89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장림처리구역(화단동 일원)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291,436	284,734	6,702	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250,000	4,179,000	71,000	1.67
강동1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고도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28,000	511,000	17,000	3.22
강변처리구역 강우시 하수차집 고도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72500	372,500	0	0
하수관로신설(확충)사업 (해동초등학교 일원) 기본설계 용역	346000	346,000	0	0
수영처리구역 오수관로 조사 및 정비 실시설계 용역	400,000	391,900	8,100	2.03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42,253	339,025	3,228	0.94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공사 감리용역	479,610	425,040	54,570	11.38
2018년 지사 웅동터널 청소용역	175,900	155,322	20,578	11.7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	181,786	181,786	0	0
영도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111,584	111,584	0	0
화전여가녹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4,600	124,600	0	0
당리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74,077	374,077	0	0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사상~하단선 2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985,219	985,219	0	0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379,946	379,946	0	0
남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설계용역	110,280	115,151	(4,871)	-4.4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상배수구역)기본및 실시설계 용역	300,000	285,000	15,000	5
남항 항만시설물(계류시설)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99,000	196,100	2,900	1.46
회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설계용역	389,200	378,200	11,000	2.83
2018년 남항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499,613	499,613	0	0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검수설비 실시설계용역	229,050	229,050	0	0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159,630	135,000	24,630	15.43
부전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8,520	138,520	0	0
정보화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재해복구공사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	300,000	272,500	27,500	9.17
온정365 프로젝트 지역역량강화 1`	100,000	100,000	0	0
낙동강뱃길복원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용역	118,400	118,400	0	0
2018 덕산정수사업소 정수시설물 청소용역	220,830	220,830	0	0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400,000	394,200	5,800	1.45
2018 화명정수사업소 정수시설물 청소용역	115,084	109,954	5,130	4.46
하수처리수 근해방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368,000	368,000	0	0
엄궁대교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500,000	500,000	0	0
미이관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공사(북구 외3개소 일원)실시설계용역	171,000	168,000	3,000	1.75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미이관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공사(동래구 외2개소 일원)실시설계용역	157,000	154,000	3,000	1.91
미이관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공사(중구 외4개소 일원)실시설계용역	176,000	173,000	3,000	1.71
미이관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공사(남구 외2개소 일원)실시설계용역	190,000	187,000	3,000	1.58
정관하수처리장 여과설비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20,000	220,000	0	0
상수원보호구역내 기존관로 정비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223,600	223,600	0	0
송정천 외2개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지형도면작성 용역	554,000	553,560	440	0.08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용역	1,600,000	1,600,000	0	0
도심대형재래시장 분휴식하수관로 설치공사(국제.부평시장)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490,600	490,600	0	0
신호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45,487	245,487	0	0
강변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47,390	247,390	0	0
2017년 고층아파트 가압 직결급수 가이드라인 설정용역	139,870	130,300	9,570	6.84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오니)처리 용역	700,000	700,000	0	0
부산역 광장~초량원도심 연결 공중보행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00,420	200,420	0	0
덕천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	220,880	220,880	0	0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정관제척지 일원 폐기물처리용역	888,500	888,400	100	0.01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정관제척지 일원 cc-tv조사및 수밀시험용역	501,700	445,700	56,000	11.16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정관제척지 일원 지하매설물 작성 용역	383,300	320,400	62,900	16.41
대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조사설계용역	489,410	489,410	0	0
1호선 역사 전기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199,283	199,283	0	0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대항항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70,730	170,730	0	0
낙동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32,500	180,450	52,050	22.39
영도마린축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 재활용 처리 용역	121,336	110,458	10,878	8.97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83,000	262,100	20,900	7.39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10,000	205,500	4,500	2.14
광안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152,800	152,800	0	0
우암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95,000	195,000	0	0
수영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64,400	164,400	0	0
화명정수장 관리도면 전산화(CAD) 및 상수도시설물측량용역	264,000	262,460	1,540	0.58
덕산정수장 관리도면 전산화(CAD) 및 상수도시설물측량용역	319,500	317,427	2,073	0.65
염소소독대체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80,000	162,500	17,500	9.72
하수찌꺼기 건조부산물 운반용역 톤당 단가 계약	585,090	585,090	0	0
2018년 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105,403	105,403	0	0
덕천3동 다복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6,500	122,430	4,070	3.22
사상공업지역 재생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171,550	171,550	0	0
당감택지지구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61,600	156,400	5,200	3.22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 [해운대처리구역(미포,청사포 일원)]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130,870	1,130,870	0	0
2018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용역	162,000	162,000	0	0
을숙도대교 ~ 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건설건설폐기물처리 용역(2차)	226,880	226,880	0	0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37,000	737,000	0	0
소방학교 야외훈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28,000	226,000	2,000	0.88
당감택지지구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400,000	400,000	0	0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00,000	798,000	2,000	0.25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공사지반조사 및 시험 용역	155,000	155,000	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정비 용역	150,000	150,000	0	0
부산교통공사 침구류 세탁용역	394,900	381,890	13,010	3.3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95,484	195,484	0	0
가덕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340,000	340,000	0	0
부산도시철도 수정역 등 정거장 시설개량 실시설계용역	356,900	356,900	0	0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991,175	991,175	0	0
모라배수지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187,530	179,810	7,720	4.12
잔산2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132,700	132,700	0	0
장산1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126,000	126,000	0	0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센터 시설용역	649,613	649,613	0	0
주요 송·배수관 누수탐사 용역	149,700	146,600	3,100	2.07
부산오페라하우스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용역	10,560,800	10,189,400	371,400	3.52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491,000	2,482,000	9,000	0.36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상주감리용역	144,072	139,542	4,530	3.14
북구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기본및 실시설계	131,000	124,600	6,400	4.89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7,840	141,889	5,951	4.03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좌천 임시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용역	433,356	433,620	(264)	-0.06
대연3교외 4개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150,000	146,400	3,600	2.4
2018년 부산교통공사 역사 방역 용역	129,206	129,206	0	0
부산교통공사 2018년 신입사원 채용 업무대행 용역	141,050	133,747	7,303	5.18
본선터널 물청소 용역	471,444	462,456	8,988	1.91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100,000	100,000	0	0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100,000	100,000	0	0
부산시민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2,604,703	2,548,198	56,505	2.17
부산도시철도 역무전자통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34,340	429,228	5,112	1.18
2018년 하수찌꺼기 건조운반 톤당 단가계약	744,338	730,970	13,368	1.8
다대 노후압송관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105,000	105,000	0	0
2018년 분뇨찌꺼기 재활용(지렁이 먹이) 위탁처리 톤당 단가계약	666,725	664,571	2,154	0.32
2018년 분뇨찌꺼기 재활용 위탁처리 톤당 단가계약	1,383,641	1,383,641	0	0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 [남부처리구역(가야분구1일원)]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197,890	197,890	0	0
상수원보호구역내 기존관로 정비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폐기물처리용역	492,000	492,000	0	0
2018년 부산환경자원공원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189,980	189,980	0	0
상수원보호구역내 기존관로 정비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456,000	1,456,000	0	0
식만~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291,620	287,380	4,240	1.45
도심대형재래시장 분류식 하수관로설치공사(국제.부평시장) 건설사업관리 용역	958,590	958,590	0	0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180,000	180,000	0	0
2018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용역	126,729	126,729	0	0

용역명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2018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용역	138,118	138,118	0	0
부산시민회관 위탁관리용역	1,574,842	1,574,842	0	0
2018년 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155,825	155,825	0	0
2018년도 남부사업소 블록 유수율 유지관리용역	194,949	194,949	0	0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550,690	500,000	50,690	9.21
길고양이 TNR사업 용역	124,000	124,000	0	0
2030 낙동강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80,000	180,000	0	0
2018년 태종대유원지 위탁관리 용역	863,726	0	863,726	100
영도 조내기고구마 영사공원 기념과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5,100	140,400	24,700	14.96
BRT사업에 따른 시청역 및 양정역 환기구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42,180	102,350	39,830	28.01

V 부 록

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161

2.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 175

3.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216

4.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239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251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 279

7. 측량대가의 기준 ····· 297

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소관 감사관실, 기술심사과
제정 2008. 12. 3 규칙 제3617호
개정 2013. 3. 13 규칙 제3771호
2013. 10. 9 규칙 제37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9>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3. 10. 9>
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과·담당관 및 팀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라. 구·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 의료원
   사. 시 출연기관(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연한 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구·군에 대하여는 시비 또는 국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으로 한정하고, 구·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구·군의 자체사업을 그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1. 공사: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발주부서는 1억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3. 3. 13>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3. 3.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3. 3. 13>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시장은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절감예산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내역을 달마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발주부서의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 공 사 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폐기물처리비: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폐기물처리비: - 이 설 비:	
재원구성	· 국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구·군비 등 천원(%)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 “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 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table>
<tr><td>건 명</td><td colspan="5"></td></tr>
<tr><td>계약금액</td><td colspan="2">천원</td><td>설계변경
요청금액</td><td colspan="2">천원</td></tr>
<tr><td>요청기관</td><td></td><td>담당자</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사업 개요</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td></tr>
<tr><td colspan="6">○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 “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 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규모)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재원구성	• 국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구·군비 등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기술용역 근거법령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여부	• 대 상 :	• 비 대 상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해당 용역에 한함).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재원구성	• 국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구·군비 등 천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 타			

○ 물품 사양 :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재원구성	• 국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구·군비 등 천원(%)		
제조(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 타			

○ 수리목적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단위	산출금액 수량	산출금액 단가	산출금액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								
이윤 (　)%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계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산출금액			계약방법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7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 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인)

2.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 105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105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 109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110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111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129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 132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 칙 ····· 136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 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 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 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 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

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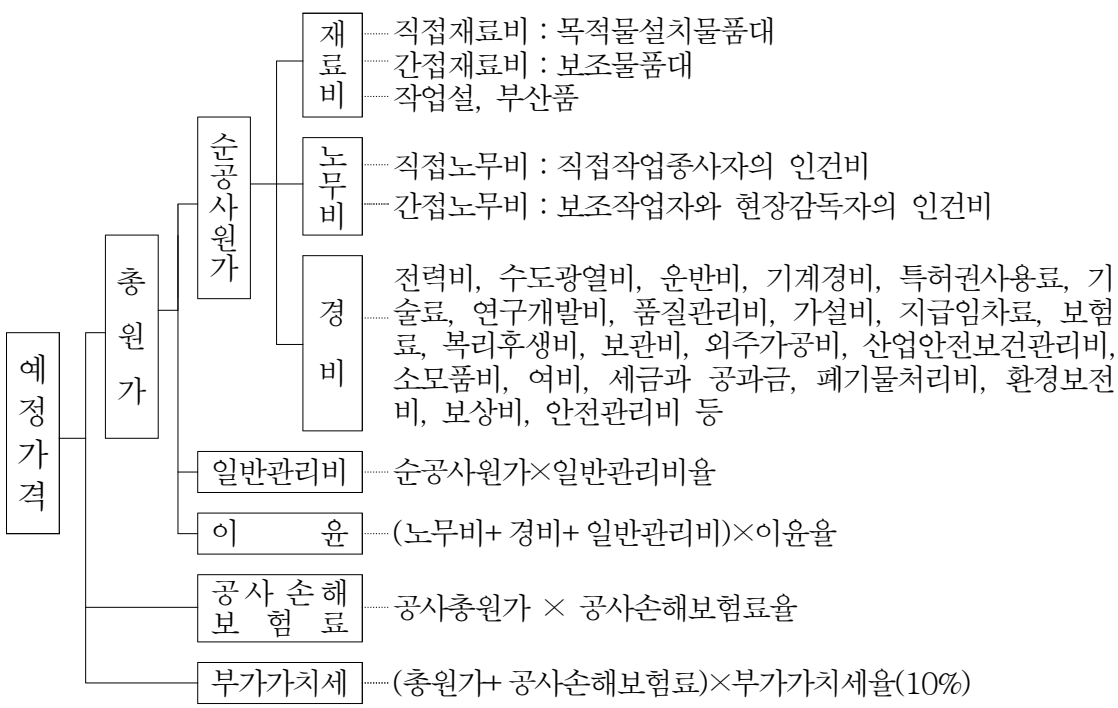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

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⑶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4.5 15.0 15.5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14.0 15.0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0 15.0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

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동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8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218,419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이며, 2019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 도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품셈"이란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품셈"이란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제30조에 따라 공표한 품셈을 말한다.

7.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 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경우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청에 제공하여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③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

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제5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26조(관리기관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품셈의 인가, 관리 등을 위해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 엔지니어링관련 기관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 소자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엔지니어링품셈 관련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나. 표준품셈 관리 외의 업무를 함으로써 품셈관리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다.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일 것

② 관리기관의 장은 품셈의 제정 및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등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고의로 인한 업무태만 또는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품셈의 제·개정 계획보고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셈의 제·개정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셈의 제·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2. 품셈 제·개정 항목 선정 및 조사방법
3. 표준품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4. 기타 품셈의 제·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추진계획이 변경 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셈의 심의를 위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부처 담당 공무원 및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2. 엔지니어링분야의 관련 업체, 학계 및 단체에서 재직중인 전문가
3. 위원장이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④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산정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품셈 제·개정 대상 항목의 선정
2. 품셈 제·개정 결과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품셈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제29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품셈은 관리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후 공표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된 표준품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31조(사업비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의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및 위원회 운영 등 품셈 업무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공표된 표준품셈의 관리) 표준품셈 관리기관은 관련 기관에서 기 공표한 표준품셈을 조사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확정·공표한다. 다만, 개정이 필요한 품셈의 경우 개정여부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차년도 수립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가. 기본설계

공사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10억원 이하	3.78	2.93	4.15	3.45
20억원 이하	3.33	2.69	3.64	3.07
30억원 이하	3.10	2.55	3.37	2.86
50억원 이하	2.82	2.39	3.06	2.63
100억원 이하	2.49	2.19	2.68	2.34
200억원 이하	2.20	2.01	2.35	2.08
300억원 이하	2.04	1.90	2.18	1.94
500억원 이하	1.86	1.78	1.98	1.78
1,000억원 이하	1.64	1.63	1.74	1.58
2,000억원 이하	1.45	1.50	1.52	1.41
3,000억원 이하	1.35	1.42	1.41	1.32
5,000억원 이하	1.23	1.33	1.28	1.21
5,000억원 초과	$0.0573x^{-0.181}$	$0.0393x^{-0.127}$	$0.0641x^{-0.189}$	$0.0509x^{-0.169}$

나. 실시설계

공사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10억원 이하	6.16	4.10	7.65	8.27	5.37
20억원 이하	5.47	3.88	6.74	7.28	4.71
30억원 이하	5.10	3.76	6.25	6.75	4.36
50억원 이하	4.67	3.62	5.69	6.15	3.96
100억원 이하	4.15	3.43	5.01	5.41	3.47
200억원 이하	3.68	3.25	4.41	4.76	3.04
300억원 이하	3.43	3.15	4.09	4.42	2.81
500억원 이하	3.15	3.03	3.73	4.03	2.55
1,000억원 이하	2.79	2.87	3.28	3.54	2.24
2,000억원 이하	2.48	2.72	2.89	3.12	1.96
3,000억원 이하	2.31	2.64	2.68	2.89	1.82
5,000억원 이하	2.12	2.54	2.44	2.64	1.65
5,000억원 초과	$0.0916x^{-0.175}$	$0.0489x^{-0.077}$	$0.1169x^{-0.184}$	$0.1263x^{-0.184}$	$0.0832x^{-0.19}$

다. 공사감리

공사비	요율(%)	공사비	요율(%)
5천만원 이하	3.02	100억원 이하	1.41
1억원 이하	2.85	200억원 이하	1.37
2억원 이하	2.26	300억원 이하	1.35
3억원 이하	2.06	500억원 이하	1.33
5억원 이하	1.89	1,000억원 이하	1.30
10억원 이하	1.66	2,000억원 이하	1.28
20억원 이하	1.53	3,000억원 이하	1.25
30억원 이하	1.48	5,000억원 이하	1.23
50억원 이하	1.45	5,000억원 초과	$3.4816X^{-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5천만원 이하	2.27	4.15	5.02	5.63	6.82	12.46	15.07	16.89	2.70
1억원 이하	2.13	3.89	4.71	5.28	6.41	11.72	14.18	15.89	2.53
2억원 이하	1.70	3.10	3.76	4.21	5.10	9.31	11.27	12.63	2.02
3억원 이하	1.55	2.83	3.42	3.84	4.65	8.50	10.29	11.53	1.84
5억원 이하	1.41	2.58	3.12	3.49	4.21	7.70	9.32	10.44	1.68
10억원 이하	1.24	2.27	2.75	3.08	3.73	6.81	8.24	9.23	1.48
20억원 이하	1.15	2.10	2.54	2.85	3.42	6.25	7.56	8.47	1.36
30억원 이하	1.10	2.02	2.44	2.74	3.30	6.04	7.30	8.18	1.31
50억원 이하	1.08	1.98	2.39	2.68	3.25	5.93	7.18	8.05	1.29
100억원 이하	1.05	1.92	2.32	2.60	3.16	5.78	7.00	7.84	1.25
200억원 이하	1.02	1.87	2.26	2.53	3.07	5.61	6.79	7.61	1.22
300억원 이하	1.01	1.85	2.23	2.50	3.05	5.57	6.74	7.55	1.21
500억원 이하	1.00	1.83	2.21	2.48	2.98	5.45	6.59	7.39	1.18
1,000억원 이하	0.98	1.79	2.16	2.42	2.94	5.38	6.50	7.29	1.16
2,000억원 이하	0.97	1.76	2.14	2.39	2.89	5.27	6.38	7.15	1.14
3,000억원 이하	0.95	1.74	2.11	2.37	2.84	5.18	6.27	7.03	1.13
5,000억원 이하	0.94	1.72	2.09	2.34	2.80	5.12	6.20	6.95	1.11
5,000억원 초과	$1.732x^{-0.088}$	$3.167x^{-0.088}$	$3.8294x^{-0.088}$	$4.2933x^{-0.088}$	$5.2029x^{-0.089}$	$9.509x^{-0.089}$	$11.506x^{-0.089}$	$12.891x^{-0.089}$	$2.3088x^{-0.0271}-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그룹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는 그룹 2를 적용한다.

구 분	대분류	세부공사
그룹 1	방송설비	• 방송국설비공사
그룹 2	통신설비	• 교환설비공사 • 전송설비공사 • 구내설비공사 •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그룹 3	통신설비	• 선로설비공사 • 별정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	•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정보설비	• 정보매체설비공사
	기타설비	•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그룹 4	통신설비	• 이동통신설비공사 • 위성통신설비공사
	정보설비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 정보망설비공사 •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 항공(항행,보안,전산) 및 항만통신설비공사
	유시티설비공사	• 유시티설비공사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12	8.01	4.20	15.33
1억원 이하	2.91	7.46	3.96	14.33
2억원 이하	2.76	7.06	3.55	13.37
3억원 이하	2.60	6.66	3.14	12.40
5억원 이하	2.47	6.32	2.94	11.73
10억원 이하	2.30	5.89	2.66	10.85
20억원 이하	2.18	5.58	2.52	10.28
30억원 이하	2.05	5.26	2.38	9.69
50억원 이하	1.95	4.99	2.29	9.23
100억원 이하	1.81	4.65	2.18	8.64
200억원 이하	1.72	4.41	2.10	8.23
300억원 이하	1.62	4.16	2.02	7.80
500억원 이하	1.54	3.94	1.95	7.43
1,000억원 이하	1.43	3.67	1.86	6.96
2,000억원 이하	1.36	3.48	1.79	6.63
3,000억원 이하	1.28	3.28	1.72	6.28
5,000억원 이하	1.21	3.11	1.66	5.98
5,000억원 초과	◦ 기본설계요율 = $19.2151 \times (\text{공사비})^{-0.1025}$ ◦ 실시설계요율 = $49.2703 \times (\text{공사비})^{-0.1025}$ ◦ 공사감리요율 = $3.3306 \times (\text{공사비})^{-0.0984}$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 (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별표 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 잡
토 공	가. 흙깎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 량 토 치 환 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지 반 개 량 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복 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복 잡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수계획도	복 잡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복 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 잡
구조물공 (공통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복 잡

구조물공 (공통사항)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복 잡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보 통
배수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사. 옹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 잡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단 순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보 통

교량공 교량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보 통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복 잡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보 통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터널공 터널공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복 잡

가시설공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가시설공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상하수 도공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옹벽 및 기타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 시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4.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14호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의 산정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용역"이란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영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및 영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를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직접인건비”란 당해 용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4.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당해 설계용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5.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6.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7. “기본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기준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8. “추가업무”란 기본업무 외에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여 과업지시서에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9.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10. “적용수량 환산계수”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 1단위가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설계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정한 설계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11. “보정계수”란 적용수량과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12. “공사난이도”란 총공사비의 변화,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대비 증감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 시설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 증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물 비중 등)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예정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인 용역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발주청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나. 철도(노반, 궤도)(고속철도, 일반철도)

다.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배후부지)

라.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

마.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

바. 상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2. 제3장 :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4장 : 발주청이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한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설계용역 대가기준

제4조(설계용역의 대가) 설계용역의 대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투입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투입인원수의 산정) ① 전체 투입인원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2.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는 별표 1에 정하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 적용수량(단위)에 환산계수를 곱하여 환산 적용수량을 산정한 후에 각 업무별 기준인원수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 산정시에 보정계수의 적용은 최대 3개 이내에서 곱하여 적용한다.
5. 제시된 업무 이외에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계상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외국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따르거나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7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3. 해당 용역기간의 변경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5.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3.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는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하며 시공단계의

기술자수는 기술지원기술자수를 포함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추가 배치되는 기술자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 낙찰률이 65%이상 70%미만 : 20% 추가
   나. 낙찰률이 60%초과 65%미만 : 30% 추가
   다. 낙찰률이 55%초과 60%미만 : 40% 추가
   라. 낙찰률이 55%이하 : 50% 추가

③ 발주청은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 건설사업관리(발주청이 발주하는 2이상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직선거리로 20km이내)하여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기술자 중 1명을 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제10조(직접인건비 산출)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

는 기술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9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제12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제13조(기술료) 기술료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4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설계자,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6.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제4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제15조(보상대상) 이 장은 영 제52조제8항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입찰에 참가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제16조(탈락자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제8항에 규정한 탈락자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탈락자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탈락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를 지급한다. 단,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는 다음 산식의 50%를 지급한다.

$$\text{예정가격} \times \left(0.3\% + \frac{\text{기술점수} - 85}{15} \times 0.3\%\right)$$

제18조(공동입찰시의 탈락자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탈락자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요청이 없으면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에 규정한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평가 용역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17조 부터 제1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세부시행기준 등) 이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를 폐지한다.

1.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8호, 2013.7.8)
2. 건설사업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2014.5.23)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9호, 2014.5.21)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방법

가.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의 산정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공통,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2)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제2호에 제시된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적용할 수 있다.

6) 단계별 업무는 제2호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자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다.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한다.

라. 공사난이도 산정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을 위한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비(억원)	50 이하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이상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개월)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마. 발주청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자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바. 기술지원기술자(시공단계에 한정한다)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2)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공동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판매시설 - 관광휴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 운수시설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요청) ①건축사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 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또는지내력검사서
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3. <삭 제>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건축사가 요청자료를 직접 입수제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9) 상세시공도서 작성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12)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따른 설계감리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CM)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 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 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6조(설계업무) ① 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호가목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 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

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④ 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⑤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0	25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50	60
계	100	120

2. 타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5	30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45	55
계	100	120

제7조(공사감리업무) ①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 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10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 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대 가 = A(1+ 1/2+ 1/3 ……+ 1/n)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n : 동일한 설계에 따른 동수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 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③ 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④ 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3. 제5조제1호라목 1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4. 제5조제1호라목 13)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

나. 2등급 : 대가의 6.5%

다. 3등급 : 대가의 6%

라. 4등급 : 대가의 5.5%

마. 5등급 : 대가의 5%

5. 제5조제1호라목 14)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5%

나. 2등급 : 대가의 7%

다. 3등급 : 대가의 6.5%

라. 4등급 : 대가의 6%

마. 5등급 : 대가의 5.5%

6.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제5조제1호라목 12)부터 14)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요율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⑤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2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발주자는 건축사에게 제6조제5항에 따른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3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 대가의 20%를 증액한다.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3.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4. 발주자의 요청으로 외국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를 함으로써 업무가 추가 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증액한다.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① 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 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5조(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산정) 제5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 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6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4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제17조(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text{요 율} = \frac{\text{평균급여액} \times \text{소요인원}(1+\text{제비율})}{\text{공사비}}$$

·평균급여액 :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

·제비율 : 제18조에서 정하는 제경비와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5-911호, 2015.12.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Ⅰ	Ⅱ	Ⅲ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각층 평면도		○	○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현장 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	○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

※대가의 구분 : Ⅰ - 3%, Ⅱ - 5%, Ⅲ - 8%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 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
		무대·조명				○
		전시·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 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전력 계통도		○	○
		조명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	○
	평면도	조명 평면도			○
		소방 평면도	○	○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 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 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바.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
	식재 평면도			○	○
	단면도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 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각종 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 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종·횡 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	○
	포장 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	○
	옹벽 상세도		1/5~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0			○
	담장 상세도		1/5~1/100			○
	방음벽 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 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바. 조 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종 별 / 공사비 / 도서의양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공 사 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게 점검 및 진단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점검 및 진단에 대한 비용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점검·진단의 과업내용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지침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선택과업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및 추가업무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나.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항목을 결정하고 실비로 계상한다.
②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지침 항3.2.2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선택과업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4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인원수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구조물의 인원수(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별표 5 참조)
⑤ 별표 4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조정비(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세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를 산정하여 인원수를 조정한다. (별표 5 참조)
⑥ 1개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관로 등)이 다양한 구조형식, 용도, 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전체 연장(또는 면적)에 적용한다.

평균조정비 =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 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점검 및 진단요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2. 차량운행비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9조(선택과업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 7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 구조·지반·수리해석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다만, 원유부이식계류시설과 갑문에 대한 기계·전기설비 조사·시험의 기준인원수는 기본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 기타 지침 항3.8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제3조제5호에 정의된 시설물들이 동일용역의 과업대상시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2.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3.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군집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중에서 그 연면적이 1,000㎡ 미만인 시설물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산된 연면적을 갖는 1개 건축물(이하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합산된 면적이 1,000㎡보다 작은 경우에도 1개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나. 군집시설물에 포함된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들의 동당 연면적별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

다. 군집시설물의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준인원수를 갖는 건축물을 기본시설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인접시설물로 간주하여,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의 인원수 산정방법에 의거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별표 6 참조)

제11조(대가의 조정)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 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경과년수	보정비
15년 이내	1.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05
25년 초과 35년 이내	1.10
35년 초과 55년 이내	1.15
55년 초과	1.20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

구 분	보정비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1.00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1개만 제공시	0.97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0.95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535호, 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준시설물(제5조제1항 관련)**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교 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50, 100, 300, 500, 1,000, 2,000, 4,000, 8,000, 16,000m 연장별 계산	- 도로교, 시가도로교, 일반철도교, 도시(고속)철도교, 복개구조물 - 콘크리트교, 강교, 특수교 - 2차로(단선), 4차로(복선), 8차로
터 널	도로터널, 2차로	300, 500, 1,000, 2,000, 4,000, 8,000, 16,000, 32,000, 40,000m 연장별 계산	- 도로, 도시(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차도 - 2차선(단선), 3차선(복선), 4차선 도로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5,000, 10,000, 30,000, 50,000, 100,000m^2 동당 연면적별 계산	- 콘크리트, 철골, 철골콘크리트, PC, 특수구조, 목구조, 조적조 - 업무용, 상업용, 주거용, 지하도상가, 특수용, 경기장, 체육관
항 만 - 계류시설	남해안, 50,000톤급 선좌, 잔교식	개 소	-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 잔교식, 직립벽 - 30,000 톤급 미만 30,000 - 50,000 톤급 50,000 톤급 초과 - 부두폭(배면매립부 길이)
- 갑 문	50,000톤급	개 소	- 30,000 톤급 미만 30,000 - 50,000 톤급 50,000 톤급 초과
-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30만톤급 선좌, 1,000m	개 소	- 1,000m 미만 1,000m - 3,000m 3,000m 초과
댐 - 콘크리트댐	댐체 60m×400m	개 소	- 콘크리트댐, 필댐, 복합댐, 조정지 - 댐체 규격(댐체 높이 및 길이)
하구둑	2,000m	개 소	- 1,000m 미만 1,000 - 3,000m 3,000m 초과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하 천 - 제방		1,000, 2,000, 4,000m 연장별 계산	
- 수문	2.0×2.0×2련, 20m	개 소	- 암거 련수 - 암거 규격(높이, 폭) - 암거 길이
- 빗물펌프장	2,000HP	처리용량별 계산	100, 500, 1,000, 2,000, 5,000HP
수도 - 도·송수관로	관로, 1,500mm	1,000, 2,000, 4,000m, 10, 30, 50, 100km 연장별 계산	- 관로, 수로터널 및 터널배수지 - 1,000mm 미만 1,000 - 2,000mm 2,000mm 초과
- 취수시설	취수탑	1, 2, 3, 4개소 개소별 계산	- 취수탑, 취수문, 취수관
- 정수장	200,000m^3/일	처리용량별 계산	1만, 5만, 10만, 20만, 40만m^3/일
- 취수가압 • 펌프장	200,000m^3/일	처리용량별 계산	1만, 5만, 10만, 20만, 50만m^3/일
- 배수지	배수지, 5,000m^3	체적별 계산	- 배수지, 조절지 - 2천, 5천, 1만, 3만, 5만m^3
공공하수처리시설	200,000m^3/일	처리용량별 계산	1만, 5만, 10만, 20만, 40만m^3/일
폐기물 매립시설	400,000m^3, 육상시설	매립면적별 계산	- 육상시설, 해안시설 - 20만, 40만, 100만, 200만, 300만m^2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개 소	- 콘크리트 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 - 높이 5-25m - 길이 50-1,000m - 부지옹벽 도로, 철도 및 기타 옹벽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면 (편도 2차로 이상)	개 소	- 토사사면, 암사면 - 높이 25-125m - 길이 100-800m -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국지도 (편도 2차로이상) 국도, 지방도, 국지도 (편도 1차로과 갓길) 국도, 지방도, 국지도 (편도 1차로) 철도사면 기타사면
암 거	공동구, 2.0×2.0×2련×1,000m	100, 300, 500, 1,000, 2,000, 4,000m 연장별 계산	- 공동구, 하수암거 - 암거 련수 1-4련 - 암거 규격

※ 1.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복개구조물은 교량으로, 지하차도는 터널로, 지하도상가는 건축물로 간주한다.

[별표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인 · 일(고급기술자)

구분	규 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교량	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50 m	82	15	26	10	5	3
		100 m	90	19	28	11	6	4
		300 m	124	37	36	16	8	5
		500 m	157	55	45	21	11	7
		1,000 m	241	99	67	34	17	10
		2,000 m	409	188	110	60	29	17
		4.000 m	630	365	168	112	46	31
		8.000 m	1,067	720	289	216	80	59
		16.000 m	1,828	1,431	506	424	140	115
터널	도로, 2차로	300 m	99	25	16	9	6	4
		500 m	116	34	19	11	6	4
		1,000 m	156	56	25	16	7	5
		2,000 m	237	101	39	27	10	7
		4,000 m	399	191	66	48	17	12
		8,000 m	723	370	120	90	29	20
		16,000 m	1,372	729	229	175	54	38
		32,000 m	2,669	1,446	446	344	102	72
		40,000 m	3,317	1,804	555	429	127	90
건축물	콘크리트조, 상업용	5,000 m^2	85	26	17	11	6	4
		10,000 m^2	93	31	18	12	6	4
		30,000 m^2	148	66	29	21	10	7
		50,000 m^2	205	102	39	29	14	9
		100,000 m^2	347	193	65	50	24	15
항만	계류시설, 잔교식	5만 톤급	206	103	53	34	21	16
	갑문	5만 톤급	389	183	76	44	22	14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30만 톤급 수상부	84	21	25	15	14	9
		수중부	64	41	22	16	-	-

구분	규 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댐	콘크리트	높이60m, 길이400m	566	227	107	53	29	16
하구둑		2,000 m	425	244	70	37	17	10
하천	제방	1,000 m	60	17	11	8	6	4
		2,000 m	74	25	14	10	7	5
		4,000 m	102	40	20	15	9	6
	수문 2.0×2.0×2련, 20m		51	17	14	10	6	4
	빗물펌프장	100 HP	49	14	14	9	5	3
		500 HP	56	18	16	10	6	4
		1,000 HP	65	24	17	11	6	4
		2,000 HP	82	34	20	13	7	4
		5,000 HP	135	66	31	21	9	6
수도	도·송수관로 1,500 mm	1,000 m	78	16	10	6	5	3
		2,000 m	92	24	13	8	5	3
		4,000 m	115	38	17	11	6	4
		10,000 m	188	80	29	22	7	5
		30,000 m	434	223	71	57	10	7
		50,000 m	681	366	113	91	15	10
		100,000 m	1,293	722	216	178	26	18
	취수시설, 취수탑	1 개소	52	17	13	8	6	4
		2 개소	65	25	15	10	9	6
		3 개소	77	33	18	12	10	7
		4 개소	90	41	20	14	12	8
	정수장	1만 m^3/일	66	18	14	8	6	4
		5만 m^3/일	79	26	16	10	6	4
		10만m^3/일	93	35	18	11	7	5
		20만m^3/일	122	54	23	15	9	6
		40만m^3/일	181	92	33	23	13	8

구분	규 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수도	취수 · 가압펌프장	1만 m^3/일	46	12	13	8	5	3
		5만 m^3/일	51	15	13	8	5	3
		10만m^3/일	56	18	15	9	6	4
		20만m^3/일	66	24	17	11	6	4
		50만m^3/일	97	43	23	15	9	5
	배수지	2,000m^3	46	12	12	8	5	3
		5,000m^3	51	15	12	8	5	3
		10,000m^3	58	19	14	10	6	4
		30,000m^3	85	35	18	13	8	5
		50,000m^3	113	51	24	18	10	6
공공하수처리시설		1만 m^3/일	79	26	16	10	6	4
		5만 m^3/일	88	32	19	12	7	4
		10만m^3/일	99	39	20	13	8	5
		20만m^3/일	121	53	24	16	9	6
		40만m^3/일	166	82	32	23	11	7
폐기물매립시설		20만m^2	69	20	15	10	6	4
		40만m^2	82	27	18	12	6	4
		100만m^2	119	48	25	17	8	6
		200만m^2	182	84	35	25	11	8
		300만m^2	245	120	46	33	14	10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64	18	15	11	6	4
절토사면	편도2차로 이상의 국도, 지방도, 국지도 부속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92	31	23	13	8	5
암 거	2.0×2.0×2련	100 m	71	13	11	6	5	3
		300 m	83	18	13	7	5	3
		500 m	94	23	14	8	6	4
		1,000 m	124	37	19	11	7	4
		2,000 m	183	64	29	18	9	5
		4,000 m	301	118	47	30	13	7

※ 기준시설물의 규모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보간법(내삽 및 외삽)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항만의 원유부이식계류시설 및 갑문의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는 기계 · 전기설비의 성능검사품이 포함되어 있음

[별표 3] **직접경비 대가기준(제8조 관련)**

가. 여비 및 현장체재비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2) 여 비

- 이동수단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대전-부산간 이동 가정)
- 인원수
  -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나. 현지 차량운행비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3) 대가방법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상한다.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계수 : $1{,}547 \times 10^{-7}$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 잡품 : 주연료비의 10%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동일)

(2) 적용 임금 :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라. 위험수당

(1)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2)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마. 기계·기구손료

(1)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별표 2의 전체기준)의 5%

(2)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별표 2의 전체기준)의 10%

바. 보고서 등 인쇄비

(1) 정밀점검 보고서 : 300쪽, 10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3) 기술심의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단, 보고서 쪽수 및 부수가 기준과 크게 상이할 경우 대가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시설물별 조정비(제5조제1항 관련)**

가. 교량

(1) 차로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3) 구조형식별 조정	
차로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구조형식	조정비
2차로(단선)	0.75	도로교	1.00		
4차로(복선)	1.00	시가도로교	1.10	콘크리트교	1.00
6차로	1.15	일반철도	1.30	강교	1.10
8차로	1.30	도시(고속)철도	1.50	특수교	1.30
		복개구조물	1.10		

나. 터널

(1) 차로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차 로 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2차로 도로	1.00	도로터널, 지하차도	1.00
3차로 도로	1.30	도시(고속)철도	1.30
4차로 도로	1.60	일반철도	1.50
단 선 철도	1.00		
복 선 철도	1.30		

※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복선 초과하는 철도터널은 면적비를 고려하여 조정비 산정

※ 야간작업 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다. 건축물

(1)구조형식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구 조 형 식	조정비	용 도	조정비
철근콘크리트	1.00	업 무 용	1.00
철골철근콘크리트	1.00	상업용, 지하도상가	1.00
철골조	0.80	주 거 용	1.10
PC조	1.00	특 수 용	1.20
특수구조	1.30	경기장, 체육관	1.20
목구조	1.20		
조적조	0.90		

라. 항만시설물

(1) 해역별 조정-계류시설 (원유부이식 제외)		(2) 구조형식별 조정-계류시설 (원유부이식 제외)		(3) 규모별 조정		
해 역	조정비	구조형식	조정비	규 모	조정비	
					계류시설	갑 문
남해안	1.00	잔교식	1.00	3만톤 미만	0.90	0.80
동해안	0.80	직립벽	0.60	3 - 5만톤	1.00	1.00
서해안	1.40			5만톤 초과	1.10	1.20

(4) 부두폭 조정 - 잔교식 (상하면 폭 동시 증가시)		(5) 배면매립부 길이 조정 - 직립벽 (상면 폭만 증가시)		(6) 해저송유관 길이별 조정 -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수중부 조사시 적용)	
부두의 폭 (m)	조정비	배면매립부 길이(m)	조정비	규모	조정비
40 미만	1.00	40 미만	1.00	1,000m 미만	1.00
40 이상~60미만	1.20	40 이상~80 미만	1.15	1,000 - 3,000m	1.50
60 이상~80미만	1.40	80 이상~120 미만	1.30	3,000m 초과	2.00
80 이상	1.60	120 이상	1.45		

마. 댐

(1) 구조형식별 조정		(2) 규격별 조정			
구 조 형 식	조정비	댐체 높이	조정비	댐체 길이	조정비
콘크리트댐	1.00	20 m	0.50	200 m	0.50
필댐	1.20	40 m	0.75	300 m	0.75
복합댐	1.30	60 m	1.00	400 m	1.00
조정지	0.70	80 m	1.15	500 m	1.15
		100 m	1.30	600 m	1.30

바. 하구둑

연 장 별 조 정	
연 장	조 정 비
1,000m 미만	0.70
1,000 - 3,000m	1.00
3,000m 초과	1.30

사. 하천시설물

수 문							
(1) 암거 련수별 조정		(2) 암거 높이별 조정		(3) 암거 폭별 조정		(4) 암거 길이별 조정	
련 수	조정비	높이(m)	조정비	폭(m)	조정비	길이(m)	조정비
1 련	0.85	1.5 미만	1.20	3.0 이하	1.00	0(암거없는 경우)	0.75
2 련	1.00	1.5~2.5	1.00	3.0 초과	1.10	0초과~50 미만	1.00
3 련	1.15	2.5 초과	1.10			50이상~100미만	1.10
1 련	1.30					100이상~200미만	1.20
1 련	1.45					200이상~500미난	1.50
1 련	1.60					500 이상	2.00

아. 수도

(1) 도 · 송수관로				(2) 취수시설	
시설종류별 조정	조정비	관경별 조정	조정비	시설종류	조정비
관 로	1.00	1,000mm 미만	0.70	취수탑	1.00
수로터널 및 터널배수지	1.50	1,000～ 2,000mm	1.00	취수문	1.00
		2,000mm 초과	1.30	취수관	0.70

(5) 배수지	
시설종류	조정비
배수지	1.00
조절지	1.00

자. 하수처리장 : 삭제

차. 폐기물처리시설

(1) 지역별 조정	
지 역	조정비
육상시설	1.00
해안시설	1.10

카. 옹벽

(1) 구조형식별 조정		(2) 규모별 조정				(3) 용도별 조정	
구조형식	조정비	높이	조정비	길이	조정비	용도	조정비
보강토, 석축	0.8	5 m	0.90	50 m	0.70	부지옹벽	1.0
및 게비온		10 m	1.00	100 m	0.80	도로, 철도 및 기	1.1
콘크리트	1.0	15 m	1.15	200 m	1.00	타 옹벽	
		20 m	1.30	300 m	1.20	해안 및 수리시	1.2
		25 m	1.55	500 m	1.60	설 옹벽	
				1,000 m	2.50		

타. 절토사면

(1) 구성재료별 조정		(2) 규모별 조정				(3) 용도별 조정	
구성재료	조정비	높이	조정비	길이	조정비	용도	조정비
토사사면	0.8	25 m	0.75	100 m	0.80	고속국도	0.8
암사면	1.0	50 m	1.00	200 m	1.00	국도, 지방도, 국지도	1.0
		75 m	1.25	400 m	1.40	(편도 2차로이상)	
		100 m	1.50	600 m	1.80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1.2
		125 m	1.75	800 m	2.20	1차로와 갓길), 기타 사면	
						국도, 지방도, 국지도	1.3
						(편도 1차로), 철도사면	

파. 암거

(1) 시설종류		(2) 련수별 조정		(3) 높이별 조정		(4) 폭별 조정	
시설종류	조정비	련 수	조정비	높이 (m)	조정비	폭 (m)	조정비
공동구	1.00	1 련	0.80	1.5 미만	1.20	3.0 미만	1.00
하수암거	1.30	2 련	1.00	1.5~2.5	1.00	3.0~5.0	1.10
		3 련	1.20	2.5 초과	1.10	5.0 초과	1.20
		4 련	1.40				

[별표 5]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 (제5조제4,5항 관련)**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시 시설물 규모가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그림의 A점),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그림의 B점)이거나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그림이 C점)인 경우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해당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x : 시설물 규모

y : 기준인원수 (또는 조정비)

[별표 6] **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제10조제3호 관련)**

구 분	산출방법	산출방법 예
①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A동 : 700㎡, B동 : 500㎡×3개동 ⇒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연면적 2,200㎡ 해당 인원수×1.0)
②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인원수 × 0.7)	C동 : 3,000㎡, D동 : 1,500㎡×4개동 ⇒ (최대연면적 3,000㎡ 해당 인원수×1.0) + 4개동×(연면적 1,500㎡ 해당 인원수×0.7)
③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인원수 × 0.7)	A동 : 700㎡, B동 : 500㎡×3개동 C동 : 3,000㎡, D동 : 1,500㎡×4개동 ⇒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최대연면적 3,000㎡ 해당 인원수×1.0) + (면적 2,200㎡ 해당 인원수×0.7) + 4개동×(연면적 1,500㎡ 해당 인원수×0.7)

[별표 7] **선택과업비용 기준 (제9조 관련)**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 ~ 20%의 범위에서 산정

실측도면 작성범위	적용비율(%)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10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20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1 GPR 탐사

▣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GPR탐사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을 안전진단 업무에 맞도록 수정

②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탐사 기준인원수에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및 측선장 보정계수 적용

③ 야간작업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7.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429호

측량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 2. 12.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대가의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접비

제8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촬영사와 항공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 경비라함은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 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항공사진 필름·지도제작 필름·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⑤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⑥ 제1항의 직접경비 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⑦ 제1항의 직접경비 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제3장 간접비

제10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 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숙 박 료	식 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정보처리기사1급 정보처리기능사1급 항공사진촬영사 측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

Ⅶ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303

2. 예규, 고시, 지침 등 ····· 303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303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303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304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304

7. 품셈 등 적산 기준 ····· 304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 규제법
○ 지하수법

2.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설계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자체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발간 설계지침
○ 지방자치단체 자체 건설공사 설계기준
○ 분야별(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공사 설계지침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국립지리정보원)
○ 엔지니어링노임단가(산업통상자원부)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채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7.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0계, 전기, 정보통신 등)00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견적기준

계약심사사례집

발 행 인 : 부산광역시장

편집총괄 : 감사관 류제성

발 행 일 : 2019. 6.

발행부서 : 부산광역시 청렴감사관실

편집위원 : 감사2 한정국

편집실무 : 토목분야: 토목6급 이병희, 토목6급 배권한, 토목6급 전정배
건축분야: 건축6급 천무봉, 녹지분야 : 녹지7급 김경완
전기분야: 전기6급 김상현, 기계분야 : 기계6급 조상현
물품·학술분야: 행정6급 이정희, 행정7급 양문희
정보통신분야: 전산6급 박경현

※ 본 사례집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감사관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051-888-1681~1689, 1738~1739)